

종합감사

감사 보고서

-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 종합감사 -

2025. 10.

교육부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 요구 사항	5
(1)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징계)	6
(2) A의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 부당 관여(징계, 시정)	10
(3) 학교법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기관경고, 경고)	17
(4)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제도 운영 부실(경고, 기관경고, 통보)	20
(5) 교원업적평가 운영 부실(경고, 기관경고, 시정)	23
(6) 교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유무 및 성범죄 전력 未조회(기관주의, 시정) ..	26
(7) 징계(배제징계)처리 반복 부당(징계)	28
(8) 정관 개정 부적정(기관경고, 시정)	36
(9) 교원소청심사 답변서 제출 부당(징계)	41

(10) 보직 발령 및 수당 지급 부적정(기관경고, 시정)	45
(11) 보직 임용자 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 부당(징계, 통보(인사자료))	47
(12) 교원 신규채용 부당 및 감사방해(징계)	50
(13) 강사 임용 결격자 전공강의 부당(징계, 경고, 시정)	57
(14) A, 자체 제작 동영상 공급계약 및 교비 집행 부당(징계, 시정, 기관경고, 통보)	63
(15) 기숙사 신축(BTO방식) 추진 부당(징계, 시정, 기관경고, 통보)	72
(16) 교비회계 운영 부당(징계, 경고, 시정, 개선)	85
(17) 국세 등 미납 및 학교계좌 압류 부적정(기관경고, 통보)	91
(18) 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경고, 기관경고, 통보, 통보(인사자료))	96
(19)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부적정(기관경고, 통보)	100
(20) 생활관 시설관리비 교비회계 지출 부적정(경고, 시정, 통보(인사자료)) ..	103
IV. 현지조치 사항	107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그간의 감사 수감 이력, 담당부서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법인과 학교의 재산, 조직·인사 및 회계관리·운영,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의 점검이 필요하였으며,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4년 행정감사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법인 응지학원의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관리와 함께 응지세무대학교의 조직·인사, 입시·학사, 예산·회계, 시설·물품 및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한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1.3월 ~ 2024.7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부서의 점검 결과, 주요 언론보도·민원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4.7.15.부터 7.31(13일)과 10.28부터 10.29일(추가 2일)까지 총 15일간 감사인력 12명(회계사 포함)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2024.7.26. 학교법인 응지학원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회의를 하고, 2024.12.19. 서면으로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5.9.(1차), 2025.5.28.(2차), 2025.6.4.(3차), 2024.6.26.(4차) 감사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¹⁾

1. 주요 연혁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2003. 3월 A가 설립(초대 이사장)하여, 2020년 E 임시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며, 현재 B가 2024.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2004. 3월 응지세무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초대 학장A), 2024년 제15대 C 총장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법인 현황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금번 감사대상인 응지세무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임원 9명을 두고 있다.

[표 1] 학교법인 응지학원 임원 현황

(2024. 4. 기준)

직 위	성 명	성 별	임 기	전·현직(주요경력)
이사장	B		2022.11.03. ~ 2026.11.02	-
이 사	-		2024.04.12 ~ 2028.04.11	-
이 사	-		2024.04.12 ~ 2028.04.11	-
이 사	-		2022.11.03 ~ 2026.11.02	-
이 사	-		2022.11.03 ~ 2026.11.02	-
이 사	-		2022.11.03 ~ 2026.11.02	-
이 사	-		2022.11.03 ~ 2026.11.02	-
감 사	-		2022.11.03 ~ 2024.11.02	-
감 사	-		2024.04.12 ~ 2026.04.11	-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대학알리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3. 재정 현황²⁾

학교법인 응지학원의 예산은 2021회계연도 431,811천원에서 2022회계연도 1,668,865천원으로 1,237,054천원(286%) 증가하였고, 응지세무대학교의 예산은 2021회계연도 9,351,225천원에서 2022회계연도 5,150,532천원으로 4,200,693천원 감소(△45%)하였다. 또한, 응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은 2021회계연도 미공시, 2022회계연도 40,010천원, 2023회계연도 35,010천원이다.

[표 2] 학교법인 등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법인회계	431,811	380,673	1,668,865	미공시	미공시
교비회계	9,351,225	7,037,878	5,150,532	미공시	미공시
산단회계	미공시	29,892	40,010	미공시	35,010

4. 전임교원 확보 현황

응지세무대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생정원 대비 39.92명이고, 재학생 대비 15.86명이며, 전임교원은 학생정원 대비 62.07%, 재학생 대비 156.52%를 확보하고 있다.

[표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및 전임교원 확보 현황

(2023. 7. 기준)

구 분	학생수(명)	전임교원현황(명)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명)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정원	1,437	36	39.92	62.07
재 학생	571		15.86	156.52

5. 시설확보 현황

응지세무대학교는 입학정원 기준(30,190㎡) 대비 127.6%의 교지를 확보(38,513㎡)하고 있고, 교사는 입학정원 기준(15,095㎡) 대비 195.4%를 확보(29,489㎡)하고 있다.

[표 4] 교육시설(교지·교사) 확보 현황

(2023.10. 입학정원 기준)

구 분	기 준	보 유	확보율(%)
교지(㎡)	30,190	38,513	127.6
교사(㎡)	15,095	29,489	195.4

2) 재정현황의 '예산'항목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 기준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산 미공시임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기관명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학교법인 웅지학원	-	-	-	-	-	· 기관경고 4건 · 기관주의 1건 · 통 보 1건 【합계 6건】	· 회수 2건 37,940천원 【합계 2건】
웅지세무 대 학 교	3명 (6건)	3명 (5건)	14명 (7건)	-	20명 (18건)	· 기관경고 8건 · 기관주의 2건 · 통 보 6건 · 시 정 4건 · 개 선 1건 【합계 21건】	· 회수 5건 5,862,613천원 【합계 5건】
합 계	3명 (6건)	3명 (5건)	14명 (7건)	-	20명 (18건)	· 기관경고 12건 · 기관주의 3건 · 통 보 7건 · 시 정 4건 · 개 선 1건 【합계 27건】	· 회수 7건 5,900,553천원 【합계 7건】
교육부 등 <별도조치>	-	-	-	-	-	· 임원취임승인취소 4건 · 통보 5건 · 수사의뢰 3건 · 과태료 1건 【합계 13건】	-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A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 부당 관여 (중징계 등)**
 - 공식 직위가 없는 A가 학교 소유 재산을 사용하고 주요 의사결정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함**에도 이를 방치한 이사장(임원취임승인취소) 및 C(현 총장, 중징계)
- **교원 신규채용 부당 및 감사방해**
 - 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원 신규채용공고를 결재**한 후 본인들이 **지원하여 조교수로 채용**된 C, D 2인
 - ※ 채용과정에서 당초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도 A(당시 C, D들과는 친족관계로 제척대상)에게 **심사를 일임**하여 A가 **단독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B(임원취임승인취소)

- 감사기간 위 사람들은 **B의 심사 미 실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감사자에게 **허위진술**(감사 방해/과태료)

○ **강사임용 결격자(A) 전공강의 부당(중징계 등)**

-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22.8.25. 사기죄로 징유 확정) 전공 관련 수업에 **자체규정상 특별프로그램 실무전문가 자격으로 강의를** 실시하도록 방치한 C, D 2인(1인은 현 총장, 중징계)

※ 교육과정 설계, 강의 등 운영 전반에 실질적 관여, 감독부서 4차례 시정명령에도 강의 지속

○ **A 자체제작 동영상 공급계약 및 교비집행 부당(중징계 등)**

- **A의 강의 동영상을 학교에 강매**(동영상 의무수강, 평가반영)하는 부당 계약을 체결하고 동 강의 동영상 제작 대가로 **27억 상당을 교비로 집행**한 C(중징계)과 F(중징계)

○ **기숙사 신축(BTO방식) 추진 부당(중징계 등)**

- A가 ◀◀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기숙사 운영권)와 수업 불가한 지하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부당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 유류비 등도 교비에서 집행**한 C(현 총장, 중징계)과 F(현 부총장, 중징계)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에게 이사회 허위 개최를 묵인하고 A가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관여하였으며 감사 당시 허위 진술한 혐의 등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본인이 결재하여 공고한 교원에 조교수로 채용되고 강사 임용 결격자에게 강의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부당한 계약으로 상당한 규모의 교비를 낭비한 행위를 한 C(현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였다.

2. 처분 요구 사항 : 20건[붙임 참조]

교 육 부**징계**

제 목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소관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교육부

내 용**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이사회를 통해 심의·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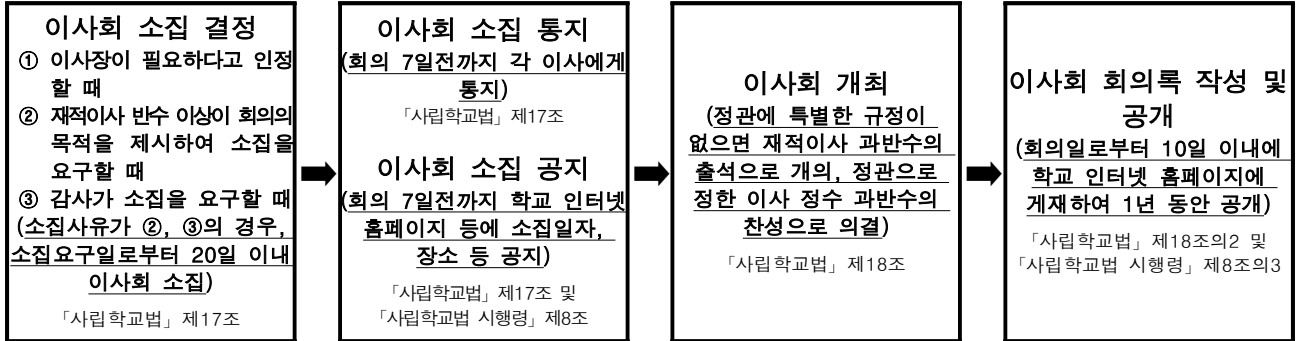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7조(민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및 제19조(임원의 직무)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등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이사회 개최 절차도



따라서,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실제 개최한 이사회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실제 참석한 임원(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 회의록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학교법인 응지학원 前 사무처 주임(9급) F(현 부총장, A와 C의 아들)는 2024. 6. 26. 제4차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이사장 포함 임원 5명이 원격영상 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여 ‘교육부 기채허가 신청’ 등 2건을 심의·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학교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사회 임원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또한, 학교법인 응지학원에서는 2024. 6. 27. 위 이사회 회의록을 기채 허가 신청 보완을 위해 교육부에 공문으로 제출(학교법인 응지학원 사무국-38호, 2024.6.27. B 결재, C 협조)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실제 개최하지 않은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교육부에서 기채승인과 관련하여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제 개최하지 않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사들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행해진 것은 아니며 유선상으로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실무자(주임 F)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학교재정이 어려워 임금체불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빨리 기채를 받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결과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았지만, 이사들에게 유선으로 동의는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학교법인의 기채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을 보완하여 신청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학교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교육부에 기채 허가 신청 보완서류로 제출한 것은 관할청을 기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은 학교법인 사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일련의 부당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5. 징계요구 양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주임 F(현 부총장)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사무직원에게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3항에 따른 징계사유 및 학교법인 응지학원(응지세무대학교) 「직원인사규칙」 제111조(징계) 제1항 제3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대학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경징계 이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前 사무처 주임(9급) F(현 부총장)에게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교 육 부

징계·시정

제 목 A의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 부당 관여

소관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교육부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장이 학교법인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응지세무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총장이 학교의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15조(이사회) 및 제16조(이사회 기능)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학교법인 응지학원 정관」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같은 정관」 제7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하고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5조 제1항(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하며, 「같은 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과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각각 학교법인의 예산, 차입금 및 재산 등과 응지세무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등을 관리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이번 종합감사 기간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에서 별도 직위가 없는 A는 2022. 12월경 이사장 사무실이었던 응지세무대학교 본관 2층 일부(201호)를 본인 전용 사무실로 변경³⁾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2024. 7. 감사일 현재까지 A는 위 사무실에 매일(일요일은 제외) 출근하며 [별표1] “A의 검토서류 및 전용 사무실 등 현황”과 같이 학교법인(교육부 등 외부기관과의 자료: 기채 신청 및 4년제 전환 자료 등) 및 학교 주요자료(교육과정, 학사일정 등)를 검토한 후 수정 및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A는 2023~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학교 교육과정 설명)를 직접 주재하고 관련 동영상은 [별표2] “A가 주재한 신입생 입학설명회 현황”과 같이 학교 홈페이지(메인화면 및 배너) 및 유튜브 등에 탑재하는 등 학교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3) 이사장 사무실은 응지세무대 제3생활관 1층에 별도 마련(안내표지 및 명패 등 없음), 설립자가 이사장 명함 및 명패 사용(前 부총장은 총장 명함 및 명패 사용)

특히, 교육부에서는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에 2023. 5. 18., 6. 21., 8. 22., 11. 15. 총 4차례에 걸쳐 A의 강의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학교법인은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2023. 8. 24.에는 A의 의견만을 첨부하여 교육부에 답변서로 제출하였다.

또한, A와 C(총장 직무대행, 현 총장, A의 아내)는 학교법인이 국세 및 지방세 합계 476백만 원 등을 체납하여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이 압류되어 학교법인의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에도 학교법인 前 사무처 주임(9급) F(현 부총장, A과 C의 아들)에게 학교법인 회계에서 차량(차량ㄱ)을 리스하도록 지시하였고, A과 C는 2023. 11. 14.부터 출·퇴근 및 대외활동 명목으로 리스 차량을 사용하면서 매월 리스료 175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의 교육목적, 교육 방향, 교육과정 등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A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며,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장과 총장이 행하며, A가 이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 학교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A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대학 2층 일부(201호)는 2004년 학교 설립 시부터 A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며, 2022년 일부 교수들이 과주경찰서에 건조물침입죄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리스 차량(차량ㄱ)은 前 부총장이자 총장 직무대행인 C의 출·퇴근용 및 대외활동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A와 부총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검토결과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에서는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에 관해 A에게 자문을 구한 것일 뿐,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장과 前 부총장이 했다고 주장

하나, B가 교육부 종합감사 시작 이후 문답과정에서 A의 강의와 관련된 교육부의 시정명령 및 학교법인의 답변서 제출 등을 비로소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장이 학교법인 사무를 총괄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의 강의와 관련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학교법인은 이사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A의 주장만을 제출한 것과 A가 학교 교육과정 설명을 포함한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직접 주재한 점 등은 A가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에 대해 A로서의 단순 자문을 넘어서 사실상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A 전용 사무실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에서는 2004년 학교 설립시부터 A실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별도 직위가 없는 A가 이사장 사무실이었던 본관 2층 일부를 본인 전용 사무실로 변경하도록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번 감사처분은 그 곳에서 A가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B가 A와 C의 의견을 고려하여 차량 리스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감사 당시 B와 C의 진술에 따르면 차량 리스는 A와 C가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A와 C는 학교법인이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이 압류되는 등 학교법인의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리스 차량을 사용하며, 고액의 리스비용을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학교법인 사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은 이에 대한 업무관리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항들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는 B와 C가 학교법인 및 학교의 업무에 대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하였어야 하나, 학교법인 및 학교에서 별도 직위 및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A가 학교법인 및 학교의 시설 사용, 교육과정 운영, 차량 리스 등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징계요구 양정

대학을 대표하는 부총장(총장 직무대행)으로서 「고등학교법」 및 「학교법인 응지학원 정관」 등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일련의 부당행위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학교법인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C의 행위는 「학교법인 응지학원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성실의무 위반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중징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A가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대학의 총괄관리자로서 업무관리책임을 해태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C(현 총장)에게 '중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② 부적정하게 지급한 차량 리스비용(보증금, 보험료, 리스료) 3,524만 원⁴⁾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랍니다. **(시정)**

4) (보증금) 965만원 / (보험료) 109만원, (리스료) 175만원×14개월

【별표1】

A의 검토서류 및 전용 사무실 등 현황

“생 략”

【별표2】

A가 주재한 신입생 입학설명회 현황

“생 략”

교 육 부

경고·기관경고

제 목 학교법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관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5조 제1항(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하며, 「같은 규칙」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따르면 수입·지출총괄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은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제15조(회계원칙) 제2호에 따르면 이사장은 회계처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사립대학(학교법인)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 사항(교육부, 매년)'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은 집행품의 및 결재 후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뒤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등을 기재한 집행품의 및 결재를 시행하고 업무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수입·지출총괄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등 회계서류 비치 등을 통해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표] '집행품의 없이 사용한 학교법인 예산 현황'과 같이 2022. 3.부터 2024. 7.⁵⁾까지 집행목적, 일시, 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집행품의 및 결재없이 총 45회, 합계 296,953천 원⁶⁾을 학교법인 회계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표] 집행품의 없이 사용한 학교법인 예산 현황

(금액 단위 : 천원)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합계	
건수	사용금액	건수	사용금액	건수	사용금액	건수	사용금액
27	65,755	7	214,609	11	16,589	45	296,953

또한, 이번 종합감사 기간 학교법인 응지학원의 회계서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법인은 수입·지출총괄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등 회계서류를 생산·관리하지 않았고 법인의 사무소에 서류를 비치하지 않았다.

5) 2022회계연도 이전에는 집행품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함.
6) 차량 리스 및 소송 관련 비용 등

4.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교수들의 임금 체불로 통장이 압류되어 집행품의 및 결재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종합감사 이후 수입·지출 총괄 및 회계서류 등을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前 사무처 주임(9급) F(현 부총장)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

②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교 육 부

경고·기관경고·통보

제 목 겸직 금지의무 위반 및 제도 운영 부실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교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교원들에게는 정상적인 복무를 위해 법령상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르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하거나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등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거나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해 투자하거나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동 규정 제26조(겸직 허가) 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응지세무대학교 소속 교원들은 겸직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응지세무대학교는 관련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C(現 총장)는 2023. 3. 1. 조교수에 임용된 후 2023. 9. 7.까지 영리업체 (주)□□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교수 K는 2021년부터 △△학원(학원)에, 부교수 L은 2024년부터 ▷▷(평생교육시설)에 총장의 정식 허가 없이 출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응지세무대학교 교학처는 2021학년도에 5명의 외부 기관 겸직을 허가하고 2023학년도 2학기에 조교수 D의 출강을 허가한 것 외에는 관련 절차를 소속 교원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겸직허가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응지세무대학교는 소속 교원들의 겸직은 관행에 따른 규정 위반이며,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허가 없이 영리업체 대표자 겸 사내이사직을 겸직하고 외부 출강을 한 관련자 모두에게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향후 소속 교원이 '겸직 금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부가 배포한 '대학교원 겸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통보)

【붙임】

겸직 금지의무 위반 현황

“생 략”

교 육 부

경고·기관경고·시정

제 목 교원업적평가 운영 부실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응지세무대학교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업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임용·승진·보수 및 포상 등에 적용하고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두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응지세무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교원자기실적보고) 제1항은 위원장은 업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 '교원자기실적보고서 제출요청서'를 송부하며, 교육영역·연구영역·기여도영역을 기록한 '교원자기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10조(교원업적평가)는 평가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업적기록표 및 교원업적 종합평가 기록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교학처에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3조(기록관리)는 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에 따른 제반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⁷⁾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분류하여 관

7)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와 동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사립대학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리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하며,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국가기록원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⁸⁾에 따르면 교원의 업적관리에 관한 업무는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동법 제50조와 제51조는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응지세무대학교 「교원인사규칙」 제21조(재임용기간) 제1항은 업적평가를 거쳐 재임용되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매 2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 제28조(승진대상자 및 기준) 제1항은 직명별 임용 기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획득한 백분위 점수가 승진최저요구기준 이상인 자는 승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응지세무대학교는 재임용과 승진심사의 기초가 되는 교원업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제반 서류의 보존기간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응지세무대학교 자체 「문서보관규정」에서 교원 업적평가자료의 보존기간을 상위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10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교원업적평가를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만 실시하고 (2023년 미실시), 두 차례 실시한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제반 서류 보관·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8) 2015.7월 제정된 후 2018.1월, 2021.12월 두 차례 개정을 거쳐 2023.12월까지 시행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교원의 업적관리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2024년부터는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으로 변경되어 시행 중임).

[표] 교원업적평가 실시 및 서류 미보관 내역

교원업적평가 대상 연도(실시일)	교원업적평가 실시 여부	미보관 서류	비고
'20년도('21.06.11.)	○	교원자기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교원업적기록표, 교원업적종합평가 기록표	-
'21년도('22.03.18.)	○	교원자기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22년도(-)	×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웅지세무대학교는 2023년에는 교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때문에 전원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여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고, 감사 이후인 2024. 12월부터는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결과

임금체불 등과 관계없이 재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등의 절차는 규정대로 실시함이 타당하다.

5.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사장은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웅지세무대학교 총장은

① 향후 재임용과 승진심사의 기초가 되는 교원업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제반 서류의 보존기간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② 자체 「문서보관규정」상 제반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국가기록원, 2024. 1.시행)」에 맞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교 육 부

기관주의·시정

제 목 교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유무 및 성범죄 전력 未조회 부적정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응지세무대학교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교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비위자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정한 인력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이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가 정하는 결격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 응지학원 「정관」 제65조(자격)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응지세무대학교는

교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결격사유 유무 및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응지세무대학교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C 등 2명을 교원 내지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결격사유 유무 등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결격사유 유무 및 성범죄 전력 未조회 현황

채용구분	소속	성명	채용일	비고
부총장	응지세무대학교	D	'22.04.14.	
조교수	응지세무대학교	D	'23.03.01.	
사무처장	응지세무대학교	C	'22.12.06.	근로계약은 '23.01.20.자로 체결
부총장	응지세무대학교	C	'23.01.20.	
조교수	응지세무대학교	C	'23.03.01.	

4. 관계기관 의견

응지세무대학교는 본 건이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착오였으며, 추후 관련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① 향후 교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② D, C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성범죄전력을 조회하고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교 육 부

징계

제 목 징계(배제징계)처리 반복 부당

소관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교육부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응지세무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며 교원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복무를 관리함에 있어 교원의 성실한 근무와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법인 응지학원 「정관」 제5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61조(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르면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62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1항, 제63조(징계의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23. 9. 22. 이전 「정관」 제39조(임용)에 따르면 조교수, 부교수의 임용권이 이사장으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었고, '23. 9. 22. 정관 개정으로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조교수, 부교수의 임용권이 이사장에게 부여되었으므로, 응지세무대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23. 9. 22. 이전에는 총장에게, '23. 9. 22. 이후에는 학교법인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의결서에는 처분 사유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적시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불복 절차를 밟도록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¹⁰⁾.

학교법인 응지학원 「정관」 제6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은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결정의 효력)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그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또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여 징계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혹여 징계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를 사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취소될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으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야 하고, 징계시효 도과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를

10) (관련 판례) ①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임용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처분사유의 내용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 사유 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 판결). ② 학교법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사유를 정확히 알려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처분권자 스스로도 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유가 과연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의를 방지하여 불이익한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2584 판결).

반복하여 재징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지 않거나 실체상 하자로 지적된 사유로 재처분을 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¹¹⁾.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23. 1.부터 응지세무대학교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3차에 걸친 징계 처분이 있었는데, 각 징계는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1, 2차 징계에 대하여는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인용 결정이, 3차 징계에 대하여는 법원의 징계무효확인 및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인정 판결이 있었다.

11) (관련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2157 판결 등 참조).

[표1] 1~3차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 판단

관련자	차수 (처분일)	대상자	징계사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 판단
(징계요구) D (징계위원) -	1차 ('23. 1.9.)	-	<u>①국민신문고 민원 제기</u> <u>②A와 부총장 형사 고발</u> <u>③80% 미만 수업 후 종강</u> <u>④언론 등에 A 비방</u> <u>⑤임시이사 파견 천막농성</u> <u>⑥A 비방 연판장 학생 서명 지시</u> <u>⑦임금체계 호봉제로 변경</u> <u>⑧대학평의회 교수위원 사퇴 종용</u> <u>⑨개방이사 추천위원 투표방법 비합리적 개정</u> <u>⑩개방이사 추천 절차 관련 규정 개정</u> <u>⑪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출 지연</u>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징계위원 특정성비 초과 금지 규정 위반 (공통) - 징계사유 불특정(공통) <법원> - 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징계요구) C (징계위원) = (징계처분) B	2차 ('23. 7.14.)	-	<u>①국민신문고 민원 제기</u> <u>②A와 부총장 형사 고발</u> <u>③80% 미만 수업 후 종강</u> ④언론 등에 A 비방 ⑤임시이사 파견 천막농성 <u>⑥임시이사 파견으로 A 몰아내려 함</u> <u>⑦A 비방 연판장 학생 서명 지시</u> <u>⑧임금체계 호봉제로 변경</u> <u>⑨개방이사 추천위원 투표방법 비합리적 개정</u> <u>⑩개방이사 추천 절차 관련 규정 개정</u> ⑪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출 지연 ⑫학생시위 참여 유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징계의결요구 권한 없음(공통) - 징계위원 자격요건 흠결(공통) - 기피의결 하자 - 징계사유 불특정(①,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징계시효 도과(④, ⑤, ⑪, ⑫) <법원> - 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징계요구) C (징계위원) - (징계처분) B	3차 ('24. 1.24.)	-	<u>①국민신문고 민원 제기</u> <u>②A와 부총장 경찰 고발</u> <u>③법원에 A, C 엄벌 요구 진정서 제출</u> ④언론 등에 A 비방 <u>⑤임시이사 파견 천막농성</u> ⑥임시이사 파견으로 경영권 탈취 ⑦개방이사 추천위원 투표방법 비합리적 개정 <u>⑧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출 지연</u> <u>⑨징계위원회 기자 대동</u> <u>⑩임시이사 파견으로 A 몰아내려 함</u>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징계의결 미요구(⑩) - 징계사유 불특정(①, ④, ⑤, ⑥, ⑦, ⑩) - 총장 제청, 이사회 의결 하자(공통) - 기피의결 하자(공통) <법원 - 파면 및 해임 처분 무효확인> - 징계의결 미요구(⑩) - 징계사유 불특정(④일부) - 징계시효 도과(④일부, ⑤, ⑥, ⑦, ⑧) - 표현의 자유 영역(⑥) - 「교원지위법」 제6조 제2항 위반(①, ②, ③) <법원 -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인정> (A)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불특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 판단, (B) 2차 징계사유와 대동소이함에도 충분한 조사 없이 징계 감행, (C) 당시A 등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A 비방 및 임시이사 파견 관련 ⇒ 학교와 대립 관계 교수 고의 배제 목적 인정

※ <관련자> 성명의 괄호안 '외'는 외부위원을 의미

※ <관련자> 밑줄 부분은 불법행위 책임자 <징계사유> 밑줄 부분은 징계사유 불특정 **볼드체 부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판단된 부분

※ 각 대상자별 징계사유가 A에 대한 비방을 주요내용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대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차 징계를 모두 취소하면서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80% 미만 수업 후 종강 등 8개의 사유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유들은 다시 2차 징계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유들이 불특정되었다는 이유로 2차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해당 사유들 중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언론 등에 A 비방 등의 6개 사유들은 다시 3차 징계에 적용되었고(2차 징계에서 추가되어 역시 징계사유가 불특정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임시이사 파견으로 A 몰아내려 함' 징계사유 포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유들이 불특정되었다는 사유로 3차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차 징계를 취소하면서 언론 등에 A 비방, 임시이사 파견 천막농성,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출 지연 등 3개의 사유들에 관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해당 사유들은 다시 3차 징계에 적용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친 교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 불특정' 내지 '징계시효 도과'로 판단된 징계사유가 다음 징계절차에 반복하여 적용되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1~3차 징계 징계사유 반복 내역

구분	1차 징계	2차 징계	3차 징계
징계사유 불특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언론 등에 A 비방 - 임시이사 파견 천막농성 - 임금체계 호봉제로 변경 - 개방이사 추천위원 투표방법 비합리적 개정 - 80% 미만 수업 후 종강 - A 비방 연판장 학생 서명 지시 - 개방이사 추천 절차 관련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언론 등에 A 비방 - 임시이사 파견 천막농성 - 임금체계 호봉제로 변경 - 개방이사 추천위원 투표방법 비합리적 개정 - 80% 미만 수업 후 종강 - A 비방 연판장 학생 서명 지시 - 개방이사 추천 절차 관련 규정 개정 - 임시이사 파견으로 A 몰아내려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언론 등에 A 비방 - 임시이사 파견 천막농성 - 임금체계 호봉제로 변경 - 개방이사 추천위원 투표방법 비합리적 개정 - 임시이사 파견으로 A 몰아내려 함
징계시효 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등에 A 비방 - 임시이사 파견 천막농성 -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출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등에 A 비방 - 임시이사 파견 천막농성 -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출 지연

이로써 응지세무대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은 A 일가의 비리¹²⁾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주요 징계

사유로 삼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절차상 하자(징계사유 불특정)를 보완하지 않은 채 혹은 실체상 하자(징계시효 도과)로 지적된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반복함으로써 ①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②학교와 대립 관계에 있는 교원들에 대해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파면 또는 해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¹³⁾.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달리 교원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아래와 같은 사진들(생략)으로써 징계사유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2) A은 2015년 교비회계 108억 원 횡령, 2022년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각 확정된 바 있고(2015년 임원취임승인 취소), 2018년 당시 총장 겸 이사였던 배우자 C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해임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A과 C는 2021년 횡령,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사유로 기소되어 현재까지 상고심 재판(2024 도17035) 계류 중임.

13) 이와 같은 취지에서 C, B, O, A, P, G, B는 법원으로부터 징계대상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사유로 학교법인 응지학원과 함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게 되었고,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A 등에게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교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징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나. 검토결과

학교법인 응지학원이 징계사유 특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교비횡령’, ‘등록금’, ‘교육’, ‘비등록금 회계’, ‘교직원 임금’, ‘고유시설’ 등의 글자를 칠판에 기재하며 수업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러한 사진이 입증하고자 하는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최대한 선해하여 ‘수업 중 학교 내지 A 비방’으로 보더라도 응지학원이 내세운 징계사유 중 이와 같은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자료들의 경우 교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입시이사 파견을 위해 시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사진 속 인물의 신원 내지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계사유 특정을 위한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 특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관련 판례의 취지는 최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나 징계의결서 자체에 처분 사유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적시하라는 취지인바(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학교법인 응지학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징계요구 양정

이상과 같이 살펴본 일련의 반복적 징계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는 해당 교원들이 받게 된 물리적·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A의 징계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 등¹⁴⁾에 비추어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¹⁵⁾상 ‘1. 성실의무 위반’ 중 ‘나목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14) A은 징계위원회에서 “A를 비방하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고”라고 발언하였고, C는 감사자와의 문답에서 “A를 비방하는 등 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는 등 교수들이 자신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법원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A 등에게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교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징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15)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징계기준)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제2조(징계기준) 제1항에 의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이 준용된다.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⑤ 前 부총장 C 경우 당시 부총장으로서의 높은 지위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비위에 연루되어 있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기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 3차 징계 징계위원과 징계의결 요구를 수행하며 A의 배우자로서 그와 함께 불법적 징계에 관여한 C에게 ‘해임’ 처분이 불가피하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2023. 1. 9.부터 2024. 1. 24.까지 AE, Q 등 12인의 교원들에 대해 반복된 불법적 징계과정에서 2, 3차 징계 징계위원과 징계의결요구를 수행한 C(현 총장)에게 ‘중징계 (해임)’ 조치(12, 13번과 병합)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교 육 부

기관경고·시정

제 목 정관 개정 부적정

소관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법인사무국은 「정관」 제72조(법인사무조직) 및 제5조(정관의 변경)에 따라 정관 개정을 포함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교원의 부패신고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징계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2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해임,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배제징계 등을 받은 소청심사청구자의

정상적 지위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동 법 제 72조의4(청렴의무)에 따른 청렴의무 준수를 위해 정관으로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021. 9. 24. 조문 신설, 2022. 3. 24. 시행).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2023. 9. 22.16) 아래 [표]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정관 개정 내역

규정	개정일 (시행일)	개정 전	개정 후
정관 제56조 제1항	'23. 9. 22. ('23. 10. 30. ~현재)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u>6. 교직원이 학내 문제를 언론에 알려 학교법인과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때</u>
정관 제47조의3	특정 불가 (2014년 이전)	(신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u>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u>
정관 제80조의2	'23. 9. 22.	(신설)	① 제8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16) 다만, 정관 제47조의3은 개정 및 시행일 특정 불가(2014년 이전)

			<p>또는 단체</p> <p>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p> <p>2. 직위를 J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p> <p>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	---

가. 「정관」 제56조 제1항(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호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교직원이 학내문제를 언론에 알려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교직원의 학내문제 언론 제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 보장 등) 제2항이 보호하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또는 고발' 행위와 취지가 동일하여 그 제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¹⁷⁾, 원칙적으로 교직원이 학내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내지 업무방해죄 죄책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명예 실추'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교직원의 정당한 언론 제보 행위까지 무분별하게 징계대상으로 삼게 됨으로써 상위법인

17) 더욱이 고도의 공공성을 갖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사립학교의 업무수행상 위법행위는 널리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성원에 의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한층 더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등 참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2항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크다¹⁸⁾.

그리고 만일 교직원의 학내문제 언론제보가 명백한 허위사실 제보 등으로 인하여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정관」 제56조 제1항 제1호(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내지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가 정하는 징계사유로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직원의 학내 문제 언론제보’와 ‘명예실추’를 별도의 징계 구성요건으로 정한 「정관」 제56조 제1항 제6호는 부적법하다¹⁹⁾.

나. 「정관」 제47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등을 당했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심사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기간(60일+30일)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데도²⁰⁾, ‘파면 등의 경우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기간’을 상위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30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을 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다. 「정관」 제80조의2(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사학기관 행동강령 세부사항 미제정)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22.3.24.시행)에 따라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2023. 9. 22.에서야 「정관」을 개정(제80조의2 신설)하면서, 「사립학교법」이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금품수수, 인사관여·이권개입·청탁금지 등 금지사항과 제재규정,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립학교법」 제72조의5를 조문을 그대로 「정관」에 인용하여 규정하였다.

18) 만일 교직원의 언론제보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언론제보가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거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19) 실제로 이러한 징계사유는 교원 11인에 대하여 적용되어 징계 처분이 가해졌으나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 인용 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제1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기한을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교직원의 학내문제 언론제보를 통한 대학 명예실추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및 행동강령 관련 규정의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결과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교직원의 학내문제 언론제보는 부패행위 신고 등의 정당한 행위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설령 그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등 징계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곧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 ‘사람의 업무방해’를 구성요건²¹⁾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응지학원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경고, 시정)

21) 「형법」 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 육 부

징계

제 목 교원소청심사 답변서 제출 부당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내 용

1. 업무개요

응지세무대학교는 교원의 복무를 관리함에 있어 교원의 성실한 근무와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응지세무대학교 사무처는 교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재송이 발생한 경우 답변서 제출 등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제2항은 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분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에는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 응지학원(응지세무대학교) 「직원인사규칙」 제4조(의무) 제1항은 모든 직원은 본 규칙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 제23조(복무규율) 제1항은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응지세무대학교는 소속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진실한 답변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응지세무대학교는 2023. 7.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AE 등 12인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 12부를 제출하면서, 당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이 2023. 5. 15.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응지세무대학교 교직원 징계요청’ 문서를 각 첨부하였는데, 사실 해당 문서는 당시 답변서 제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무처 주임 F가 기안하여 공동 대결자를 C와 D로 지정 후 결재상신하였으나 당시 D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결재를 거부하자 모든 결재자들의 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력한 것이었다. 해당 문서는 하단에 결재자들의 성명과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인쇄되어 있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문서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당시 해당 문서를 수령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입증취지를 사실로 오인²²⁾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F는 실지감사 당시 응지세무대학교 문서시스템상 문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하여도 본래 응지세무대학교 총장 직인이 인쇄되므로 본인이 임의로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조작한 것은 아니고, 당시 D가 결재를 거부하므로 일단 미결된 상태에서 문서를 제출한 후 사후결재를 득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검토결과

실지감사 당시 F의 위 주장과 달리 응지세무대학교 문서시스템상 문서가 완결

22) 실제로 당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AE 등 교원 12인에 대한 결정서(2023-43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등)에는 “응지세무대학교 부총장 C, D은 2023. 5. 15. 피청구인 및 교원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였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하여도 응지세무대학교 총장 직인이 인쇄되지 않는 사실을 감사자와 본인이 함께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단순히 실수라는 답변만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미결된 문서가 정상적으로 결재된 것처럼 입증자료로 제출된 사실은 그 자체로 부적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사후결재를 득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답변으로 해당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그 책임 또한 가법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문서는 사후에 D의 결재를 득하지도 못하였다).

5. 징계요구 양정

다수의 교원들에 대한 배제징계 처분의 정당성 입증 과정에서의 답변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업무는 그 중요도가 작다고 볼 수 없고, F이 해당 문서에 직인을 임의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학교법인 응지학원(응지세무대학교) 「직원인사규칙」 제111조(징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문서가 입증하려고 하였던 내용의 진위가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판단에 관련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²³⁾ 등에 비추어 징계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할 것이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징계 업무를 담당하며 답변서 제출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前 사무처 주임 F(현 부총장)에게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23) 당시 징계과정에서 ‘징계 요청’(응지세무대학교 총장→학교법인 응지학원, 징계위원회)에 이어 ‘징계의결 요구’(징계권자→징계위원회)절차가 있었는데, ‘징계의결 요구’와 달리 ‘징계요청’은 법정 필수 절차는 아니었다.

【참고】

F가 제출한 문서

“생략”

교 육 부

기관경고·시정

제 목 보직 발령 및 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채용한다. 응지세무대학교 기획처는 「사무분장규정」 제3조(기획처)에 따라 교내 행정조직의 인력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²⁴⁾, 같은 규정 제4조(사무처) 제2항에 따라 사무처는 교직원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법인 응지학원 「정관」 제39조(임용) 제6항은 부총장, 처장 등의 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지세무대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보직은 총장의 제청에 따른 이사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²⁵⁾,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부여된 직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²⁶⁾되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4) 다만 2023. 7. 18. 기획처장을 타 직위로 전보하여 ◇◇ 관리인력 외 기획처 현원이 0명이 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사무처에서 수행하고 있다(그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인사발령 업무를 사무처에서 수행).

25) 이어 통상적으로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부서(사무처)가 이사장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에게 발령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보직 부여와 달리 보직 해제의 경우 총장 제청을 제외한 이사장 명령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26)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표] '보직 발령 등 부적정 내역'과 같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메일 공지 또는 구두 통보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한 ◇◇장, 기획처장 등의 직을 발령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다. 또한 前 부총장 D의 경우 2023. 3. 29.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2023. 7. 18. '인사알림 메일'을 통해 부총장 직을 면하게 되었음에도, 월 200만 원의 보직수당 (총 12회, 합계금액 24,000,000원)²⁷⁾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다.

[표] 보직 발령 등 부적정 내역

보직기간	성명	직위	발령사항	제청 (총장)	명령 (이사장)	발령 방법
'22.3.2.~ '23.7.18.	R	◇◇장	보직	X	X	이메일 공지
			보직 해제	-		
'20.10.1.~ '22.3.1.	S	◇◇장	보직 해제	-	X	-
'22.4.25.~ '23.7.18.	R	기획처장	보직 해제	-	X	이메일 공지
'23.3.~ '23.7.18.	D	부총장	보직 해제	-	X	이메일 공지, 구두 통보
'23.7.19.~	C	◇◇장	보직	X	X	공식으로 업무대행
				-		

※ 출처 : 응지세무대학교 사무처 제출자료

4.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교직원들의 퇴사로 인한 인력 부족 및 관련 규정 숙지 미숙으로 업무처리가 미흡하였으며, D에게 지급된 보직수당은 환수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 및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향후 교직원 보직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前 부총장 D에게 지급된 보직수당 24,000,000원을 전액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7) 2023. 8.부터 2024. 5.까지 10회, 2024. 8.부터 2024. 9.까지 2회, 총 12회에 걸쳐 24,000,000원 지급됨 (응지세무대학교 제출 자료).

교 육 부

징계·통보(인사자료)

제 목 보직 임용자 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 부당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교원을 임용하여야 하고, 응지세무대학교 교학처는 「사무분장규정(응지세무대)」 제4조(교학처)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 등 교원인사 및 수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임용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바, 학교법인 응지학원 「정관」 제39조(임용)에 따르면 2023. 9. 22. 이전 조교수, 부교수의 임용권이 이사장으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구분하며, 총장은 교무 총괄, 소속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의 임무를, 나머지 교원은 학생 교육·지도, 학문 연구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1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여, 학교의 장 임용에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채용심사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 채용 등),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원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 등 소정의 심사(이하 ‘교원임용 절차라 함)를 통해 임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총장, 부총장 등에 임용된 사실만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정하는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이하 ‘교원’이라 함)’²⁸⁾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응지세무대학교는 2022. 4. 14. 부총장으로 보직발령된 D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교원임용절차’가 없었음에도 2022. 6. 13.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조교수 신규임용 보고’를 하였고,²⁹⁾ 2022. 6. 1. 총장으로 보직발령된 설립자 A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교원임용절차’가 없었음에도 인사기록카드에 조교수로 기재하고 2022학년도 2학기 강좌개설대장에 A를 담당 교수로 표기함으로써 교원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응지세무대학교는 특정인이 총장·부총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원 임용에 필요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D와 A의 교원 신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결과

응지세무대학교가 상기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법률자문서의 내용은 ‘총장’이 「대학교원자격기준」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교원임용절차’ 없이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총장, 부총장 등에 임용된 경우 ‘교원임용절차’ 없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28)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 임무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를 말함.

29) 응지세무대학교는 2022학년도 2학기에 D이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중고급회계 등 8개 강의를 담당하도록 한 후 A이 특별프로그램 명목의 수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별건(처분안 13)에서 논함.

문제되는 본 사안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결국, 총장·부총장 등에 임용된 자가 「대학교원자격기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교원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교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음은 명백함에도, 응지세무대학교는 부총장 임용만 있었던 D에 대하여 허위로 교원임용 보고를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배치되는 응지세무대학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징계요구 양정

교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적 행정목적에 고려할 때 교원 인사 담당인 교학처장 T, 교원인사팀장 N을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바, 이들의 행위는 학교법인 응지학원(응지세무대학교) 「직원인사규칙」 제111조(징계)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A의 경우 2022. 8월 총장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그 후 교원 신분 유지를 전제한 여타 행위는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할 것이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교원임용 절차'가 없었던 D와 A에 대하여 조교수 임용보고 등의 행위를 한 T, N에게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 및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교학처 과장 U는 '경고' 대상이나 감사일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 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교 육 부

징 계

제 목 교원 신규채용 부당(인사관여, 채용심사 부적법 등) 및 감사방해

소관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교육부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을 임용한다. 또한 응지세무대학교 교학처는 「사무분장규정(응지세무대)」 제4조(교학처) 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 등 교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등)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5항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 공고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4조의4(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르면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족³⁰⁾인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고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회피하여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청렴의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령을

30)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임.

준수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 손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사립학교는 이러한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강령에는 '직위를 J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웅지세무대학교는 2023. 9. 22.에서야 정관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법이 정한 내용을 未구체화). 아울러, 「준법통제에 관한 규정(웅지세무대, 2020. 3. 26. 제정)」 제13조(준법강령의 준수) 제1항 제1호는 교직원은 언제나 학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학교와의 이해충돌 행위, 내부 거래행위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학교의 직원이 자신의 교원 채용과 관련된 공문을 결재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관련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사관여' 내지는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웅지학원이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법인과 학교의 직원들은 법정 절차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행위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여서는 안되고, 이와 관련하여 관할청의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허위진술 등으로 관할청의 정당한 감사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채용절차 부실(채용계획 미수립, 채용 공고기간 과소) — 관련자: 교학처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는 2023년도 1학기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23. 1. 26.을 초일로 산입 시 적법한 공고기간인 15일보다 4일 미달한 총 11일만을 공고한 사실이 있다³¹⁾.

나. 인사관여 부적정(이해충돌) — 관련자: C, D

C와 D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① 2023. 1. 26. 「2023학년도 1학기 신규교원

31) 타 사이트인 '♡♡넷'에는 10일간(2023.1.27.~2.5.) 공고(1.30. 채용공고 수정)

채용공고」 공문을 결재하였고³²⁾ 이후 2023. 1. 30. 채용분야에 ♣♣과를 추가하고 서류제출기한을 2023. 2. 3.에서 2023. 2. 5.로 연장하는 내용의 「2023학년도 1학기 교수추가초빙공고 수정」 공문을 결재하였다.

이후 C와 D는 ② 본인들이 결재한 '신규교원 채용공고'에 지원* 후 ③ 위법한 채용심사(적법하게 위촉된 심사위원이 배제된 채 제척대상 심사위원이 면접 실시)에 피면접자로 참여하였고, ④ 2023. 2. 13. 본인들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교원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C와 D의 2023학년도 전임교원 신규채용 안건 가결됨), 결국 전임교원(조교수)으로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 D는 당초 채용분야였던 ♣♣과 스포츠심리학에, C는 채용공고 수정을 통해 추가된 채용분야인 ♣♣과 스포츠예술경영에 지원

C와 D가 자신들의 교원 채용을 위해 행한 일련의 위 행위들(①~④)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내지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C와 D가 당시 부총장으로서 위법한 채용심사에 참여한 부분은 단순한 인사관여를 넘어 공정해야 할 채용 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아야 한다(아래 '라.'항에서 관련사항 후술함).

다. 제척대상 채용심사위원 위촉 — 관련자: 교학처

웅지세무대학교는 위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겸한 서류심사위원으로 웅지학원 B, 교학처장 T, 설립자 A를 위촉하고, 면접심사위원으로는 B와 A를 위촉하였다. 그런데 A은 당시 지원자였던 C(A의 배우자), D(A의 사촌형수)과 친족관계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제척대상이었다³³⁾.

라. 채용심사 부적법 및 감사방해

① 채용심사 부적법 — 관련자: B

B는 2024. 7. 24. 실지감사 시 2023년도 1학기 교원 신규채용 관련 감사자와 실시한 문답에서, 당시 자신이 서류·면접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직접 해당 심사에

32) 당시 총장 공석 상태로, C가 중간결재,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D가 최종결재하였다.

33) 이 과정에서 A 스스로도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채용심사를 회피하지 않았고, D와 C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참여한 바 있으며 본인 명의로 서명, 날인된 서류심사표 6부와 면접심사표 2부에 기재된 심사대상자의 점수 역시 본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당시 신규채용 지원자였던 C와 D의 경우에는 2024. 7. 24. 실지감사 시 감사자와의 문답에서 B가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는 2024. 10. 28. 추가 실지감사 시까지 해당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① B는 2024. 10. 28. 추가 실지감사 시 서류·면접심사에 본인이 참여하여 심사를 한 적이 없으며 심사표는 불상인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 후 2024. 12. 19. 제출한 답변서에는 A에게 심사를 일임하여 A가 채용심사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D의 경우에도 2024. 10. 28. 추가 실지감사 시 B가 면접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A만이 면접심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결국 응지학원은 2024. 12. 19.자 답변서에서 B의 위임에 따라 A가 서류·면접심사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B가 채용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적법하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B가 제외된 채 제척 대상인 A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당시 채용심사는 그 자체를 위법·무효로 보아야 한다.³⁴⁾

② 감사방해(허위진술) — 관련자: B, C, D

또한 B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B, C, D의 각 진술³⁵⁾은 허위임이 확인된바,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정하는 ‘감사방해’에 해당한다.

「표1」 허위진술 내역

	실지감사('24.7.24.)	추가 실지감사('24.10.28.)	허위 진술 횟수
B	본인이 서류·면접심사 참여(허위)	본인이 서류·면접심사 참여×	1회
C	B 면접심사 참여(허위)	B 면접심사 참여(허위)	2회
D	B 포함 다수인 면접심사 참여(허위)	B 면접심사 참여×	1회

34) 한편, 이러한 사실은 그러한 심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C와 D이 위법한 면접심사에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채용 전반에 책임이 있는 부총장으로서 위법한 채용심사에 지원자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나.’항에서 관련사항 전술함).

35) B가 2024. 7. 24. 실지감사 시 감사자와의 문답에서 본인이 서류·면접심사에 참여하고 해당 심사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 C가 2024. 7. 24. 실지감사와 2024. 10. 28. 추가 실지감사 시 감사자와의 문답에서 B가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 D이 2024. 7. 24. 실지감사 시 B가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마. 소결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지적사항 정리

관련자	채용절차	채용공고	채용심사	교원인사위원회
교학처		√ 채용계획 미수립 √ 공고기간 과소	√ A 심사위원 위촉	
		☞ 지적사항: 절차부실(가)	☞ 지적사항: 제척대상 심사위원 위촉(다)	
C D		√ 채용 공고 게재 후 채용 지원	√ 위법한 채용심사 참여	√ 인사위원 참여
		☞ 지적사항: 인사관여(나)		
			√ 심사 관련 허위 진술(B 참여)	
B			√ 심사위원직A에게 일임	
			☞ 지적사항: 채용심사 부적법(라 ①)	
			√ 심사 관련 허위 진술(B 참여)	
			☞ 지적사항: 감사방해(라 ②)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C와 D의 부총장 임용만으로 교원 임용 절차 없이 교원의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³⁶⁾, 그럼에도 민원과 교육부 감사 대비를 사유로 교원 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B의 채용심사표와 관련해서는 B가 C와 D의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 후 A에게 심사를 일임하여 A가 채용심사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감사방해(허위진술)와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으며, 추후 교원 신규채용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 결과

학교법인 응지학원의 의견을 종합하면 2023년도 1학기 교원 신규채용은 前 부총장 D와 C가 교원 임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

감사방해와 관련해서는, B의 경우 2024. 10. 28. 추가 실지감사 당시 감사자와의 문답에서 최초 실지감사 시 타인에 의해 작성된 채용심사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교원 채용에 이사장으로 관여한 사항인데, 문서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당시 채용심사표가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지하고도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서 B에게 감사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상당하고, C와 D의 경우에는 제반 사정³⁷⁾에 비추어 감사방해에 대한 ‘중과실’이 있었음이 상당하다.

5. 징계요구 양정

C의 인사관여(3. 나항), 감사방해(3. 라 ②항)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학교 운영의 기초가 되는 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행정목적에 고려할 때 해당 비위 모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고, ② 신규채용 관련 비위와 감사방해 모두 관련 정황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최소 중과실 이상이 인정되는 점, ③ 인사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³⁸⁾상 ‘1. 성실의무 위반’ 중 ‘사목 신규채용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부터 해임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④ 신규채용 관련 비위가 ‘교원 임용 전 행위’라 하더라도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대법원

37) C의 경우 2024. 10. 28. 추가 실지감사 시 감사자와의 문답에서, B가 이미 본인이 채용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수 차례 고지받고도 B가 면접심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반복한 점, 기타 C와 D의 채용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 등을 고려함.

38)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징계기준)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제2조(징계기준) 제1항에 의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이 준용된다.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참조), ⑤ C의 경우 부총장으로서의 높은 지위와 책임에도 다수의 비위에 연루되어 있고(처분안 7, 13번 등 참조)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에게 '중징계(해임)' 처분이 불가피하다.

D의 인사관여(3. 나항), 감사방해(3. 라 ②항)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위 ①, ②, ③, ④항의 사유와 더불어, A와의 관계 및 지위 등에 비추어 추정되는 비위 개입 정도³⁹⁾, 연관되어 있는 타 비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 처분이 적정할 것이다.

교학처의 교원 인사 담당 주요 보직자인 T와 N의 행위(3. 가'항, '3. 나항 관련)는 교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 등 차원에서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학교법인 응지학원(응지세무대학교) 「직원인사규칙」 제111조(징계)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당시 T과 N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할 것이다.

5.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① C에게 당시 응지세무대학교 부총장으로서 ①본인이 결재한 교원 신규채용공고에 스스로 지원하고 위법한 채용심사에 참여한 등의 '인사관여' 부분, ②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감사자에게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관할청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해임)' 조치(7번에 포함)하시기 바라고, **(징계)**

② D에게 당시 응지세무대학교 부총장으로서 ①본인이 결재한 교원 신규채용공고에 스스로 지원하고 위법한 채용심사에 참여한 등의 '인사관여' 부분, ②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감사자에게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관할청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조치(13번과 병합)하시기 바라고, **(징계)**

③ T와 N에게 ①채용절차 부실(교원 신규채용계획 미수립, 채용공고기간 미준수)와 ②제척대상 심사위원 위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39) 당시 D와 C 모두 부총장이기는 하였으나, 이전부터 A의 배우자로서 이사 및 총장 직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C가 실질적인 부총장 역할을 수행하며 본 건 비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교 육 부

징계·경고·시정

제 목 강사 임용 결격자 전공강의 부당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교육부

내 용

1. 업무개요

응지세무대학교는 「학칙」 제33조(교육과정), 제36조(수업) 등에 따라 학과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22학년도 2학기부터 '24학년도 1학기('24.7. 감사 시점)까지 회계·세법 전공과목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학칙」 제33조 제5항의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응지세무대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 관련 내역

학년도(학기)	특별교육프로그램 교과목 ※ 전공필수·전공선택에 해당함	담당교수	실무전문가
2022학년도 2학기	중급회계, 원가회계 등 8개 교과목	D	A
2023학년도 1학기	관리회계, 고급회계 등 9개 교과목	C	A
2023학년도 2학기	재무회계실습, 세법실습 등 10개 교과목	C	A
2024학년도 1학기	회계원리, 관리회계 등 9개 교과목	C	A

※ ①D: 부총장(2022.4.14.), 조교수(2023.3.1.) ②C: 부총장(2023.1.20.), 조교수(2023.3.1.)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대학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⁴⁰⁾ 및 제17조(겸임교원 등)⁴¹⁾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40)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41)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강사 임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임용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교원의 자격 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 임용 시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 자격 인정이 불가하다.

웅지세무대학교는 학칙 제33조(교육과정) 제5항, 제36조(수업) 제6항 및 시행세칙 제13조(교육과정)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중급회계·원가회계 등 회계·세무 전공 과목을 특별교육프로그램(담당교원은 강의계획과 성적관리 등 담당, 실무전문가는 임용절차 없이 담당교원이 직접 섭외하고 전공강의를 전담)이라는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으로 채용되어야 하고, 교원 채용 시의 자격요건은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웅지세무대학교가 '22. 2학기부터 '24. 1학기까지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담당교원(C, D)은 회계·세무 비전공자(C는 ☆☆학, D은 ●●학)로서 강의 계획·성적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A는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교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격자에 해당하지만 실무전문가로서 강의를 담당하였다.

※ A는 '22. 8. 25. 사기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으로 총장직에서 당연퇴직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4호(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 및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따라 '22. 8.~'28. 8.까지 총 6년간(집행유예 4년 + 유예종료 후 2년) 강사 등 교원 임용이 불가

본 건의 실무전문가는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강사), 제17조(겸임교원 등)에 따른 교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실무전문가가 단순한 강의보조가 아닌 실제 교원 내지 강사와 동일하게 강의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교원 및 강사 자격조건을 적용하여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원자격 인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따라서 실무전문가 A는 교원(강사 등) 임용 절차가 없었고 임용도 불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별교육프로그램 교수 D는 교원 임용 절차 없이 '22. 4. 14. 부총장 보직 임용만으로 '22. 2학기에 회계·세무 전공과목을 담당하였고, 교수 C는 교원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음에도 '23. 1학기에서 '24. 1학기까지 회계·세무 전공과목을 담당하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특별교육프로그램에서 강의를 담당한 실무전문가 A는 대학 전공수업에서 강사 등 교원이 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관리회계, 법인세법 등 전공과목을 강의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총 4차례(23.5.18, 6.21, 8.22, 11.15.) 대학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대학은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웅지세무대학교는 특별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회계·세무 실력향상을 위해 학칙 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담당교수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며, 동 교육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교육내용과 강의방법 등은 담당교수가 외부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출석, 성적, 학점 관리는 담당교수가 관리하며, 담당교수가 동 과정에 대해 직접 외부전문가를 섭외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 채용과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담당교수가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는 교원 및 강사의 자격조건을 적용할 필요 없다고 한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에 의할 경우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 등 다양한 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대학의 특별교육프로그램은 적법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나. 검토결과

웅지세무대학교는 학생의 전공 관련 실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학칙에 근거를 둬서 운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의 담당교수는 실제 강의를 하지 않고 있고, 실무전문가는 담당교수가 하지 않는 회계·세무 강의를 전담하는 자로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강사), 제17조(겸임교원 등)에 따른 교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실무전문가는 관련 법령의 교원(강사 등) 자격 조건 충족과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별교육프로그램 실무전문가인 A은 집행유예 확정판결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가 적용되어 교원(강사 등) 임용 자격이 없으며, 교원 임용 절차도 없었으므로 동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5. 징계요구 양정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강사), 제17조(겸임교원 등)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등을 위반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가 수업을 담당하도록 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성실의무위반다.무작위 또는 직무태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C(現 총장)는 ☆☆학 전공자이지만 회계원리 등 회계·세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배우자이자 실무전문가인 A가 '23. 1학기부터 '24. 2학기까지(24. 7월 감사 후 포함) 오랜기간 동안 불법적인 강의를 하도록 조장 내지 방조하였고, 다수의 비위에 연루되어 있는 점(처분안 7, 12번 참조) 등을 참작할 때 중징계(해임), 前 부총장 D은 본건 외 '교원 신규채용 부당 및 감사방해'(처분안 12번 참조)와 일정 기간('22. 2학기) 후 해당 보직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 교학처장 T은 교원 인사, 수업 등 교무 업무 총괄자로 특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적격자의 수업을 묵인하였는바 경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담당 교수가 임의로 강사 등 교원 임용 결격자로 하여금 특별교육프로그램(회계·세무 교과목) 전공 강의를 전담하도록 한 C(現 총장) 대해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라 중징계(해임) 처분(7번에 포함)하시기 바라며, 前 부총장 D는 「같은 법」에 따른 중징계 처분(12번에 포함), 교학처장 T에 대해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경고)

웅지세무대학교 총장은

학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붙임】

A 참여 특별교육프로그램 내역

“생 략”

교 육 부

징계·시정·기관경고·통보

제 목 A, 자체제작 동영상 공급계약 및 교비 집행 부당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A는 학교 운영을 시작한 2004. 3.경부터 2024. 7. 감사일 현재까지 자신이 설립한 동영상 공급 업체인 (주)□□42) 등을 통해 응지세무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관련있는 과목에 대한 강의 동영상43)을 임의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수업 및 예·복습용으로 활용44)하도록 해오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42) 대표A / 설립일 2008.6.5. / (업태 및 종목) 교육서비스,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온라인 교육학원

43) 과거 A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응지아카데미)에서 ①학원생 대상으로 수업한 영상을 촬영해 응지세무대 학생에게 제공하거나 ②응지세무대학교 학생 대상으로 수업한 영상을 촬영해 다시 제공, 2024년 7월 감사일 ③현재는 학생 없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서 촬영해 응지세무대학교 학생들에게 제공 중

44) 2004년 대학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 A 자신이 운영하던 응지아카데미학원에서 수강생 대상으로 세무·회계사자격증 취득 관련으로 강의한 영상을 촬영해 소속학교 학생들이 의무적 수강 또는 학교에 의무(강제)구매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당시 총장 또는 부총장(지인 또는 아내)을 통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함. 2024.7. 감사에서A 및 C는 위 의무적 동영상 수업을 '플립러닝 수업'이라고 하며, 본 수업 전에 반드시 자신이 제작해 제공한 동영상을 시청 후 수업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음(성적평가에 반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응지세무대학교 「학칙」 제36조(수업) 제6항에 따르면 수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플립러닝,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협업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3.16.)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6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및 제15조(회계원칙) 제2호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청렴의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 손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사립학교는 이러한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정관에는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응지세무대학교 「준법통제에 관한 규정(제정일 '203.26.)」 제13조(준법강령의 준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직원은 언제나 학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학교와의 이해충돌 행위, 내부 거래행위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원칙)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6호 및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르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제2호(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결격자(A)에 의한 동영상 강의 대금 지급 부적정

A는 교비 횡령죄 등으로 2015. 11. '임원취임승인취소(이하 "임취")'되고, 강의 무자격으로 '강의를 중단하라'는 교육부 시정명령을 무려 4차례나(23.5.18., 6.21., 8.22., 11.15.)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학교는 개교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A가 제작한 동영상을 임의로 학생들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한 수업(일명 '플립러닝 수업')⁴⁵⁾을 실시하였고, 2020학년도 이후에야 학칙에 반영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학교 측은 플립러닝 수업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2020학년도부터는 학칙 개정으로 동 수업에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45) 학교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협업강의' 수업 근거를 위해 2020.3.16. 학칙 제36조(수업)를 개정하였으나, 2004년 학교설립 당시부터 2019학년도까지 근거 없이 운영해 옴.

동 수업이 '결격자에 의한 수업'이고, 학칙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동영상은 학생들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한 점에는 변함이 없어 부당하다.

또한, 응지세무대학교는 A와 독점 계약을 통해 동영상 제공 대가를 [표1]과 같이 고정적으로 교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동영상 공급계약 현황

계약일	기간	금액	업체명	총장
① 2014.3.3.	2014~2016학년도 (총 6학기)	학기당 6.3억 (연 12.6억, 총37.8억)	▲▲ (대표A)	V
② 2017.3.6.	2017학년도 (총 2학기)	학기당 5억 (연 10억)	㈜▶▶ (W)	C (A 妻)
③ 미상	2018~2021학년도는	'코로나 19'으로 중단		
④ 2022.6.1.	2022.6.1.~2026.2.28.	1,2학기 평균 재학생 1인 당 100만 원을 공급한 금액 +2억 원(졸업생 및 휴학생 포함)	▲▲ (대표 C)	A

이와 관련한 동 동영상 공급 계약이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당한 계약이라는 민원이 2015. 7. 22. 교육부로 제기되자, 학교는 동 계약을 2015. 8. 31.로 해지통보하여 교육부에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보고했으나 2024. 7. 교육부 감사 결과, 업체 명의만 타인으로 돌렸을 뿐 동 계약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A, C 등에게 제기된 소송 판결문을 보면 해당 동영상의 활용도가 낮고, 제작 과정이 단순하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학교가 불필요한 계약을 통해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챙겨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불합리한 손해배상액의 지급 부적정

학교 측과 A는 상기 [표1]과 같이 2014. 3. 3. 2014~2016학년도(6개 학기) 동안 동영상 공급 계약(원 ①번)을 체결하였는데, 2015. 7. 22. 교육부에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 8. 31.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채권소멸시효(단기 3년)가 완성된 시점인 2018. 8. 31. 이후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는데도, 4년이 이미 경과한 2022. 6. 7. 상기 계약이 학교의 귀책(교육부 권고에 따른 학교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동영상 공급업체인 ▲▲(A 설립업체)가 손해를 입었다.)으로 해지되어, 발생한 미지급금 1,890,000,000^①원(학기당 6.3억× 3학기분(2015학년도2학기 2016학년도12학기분)과 그에 따른 업체(▲▲)의 은행 미상환금 200,000,000^②원, 총 2,090,000,000^③=①+②원을 [표2]와 같이 학교가 업체에 손해배상한다는 부당한 '합의서'를 A와 C가 작성하였다.

[표2] 합 의 서

웅지세무대학교는 ▲▲와의 동영상공급계약(계약기간: 2014.3.1.~2017.2.28., 공급가액: 매학기당 6억 3천만 원)을 교육부의 권고로 2015년 8월에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기 위해 ▲▲와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다.

1. 웅지세무대학교는 계약해지로 ▲▲에 지급하지 않은 공급대가 18억 9천만 원(6.3억×3학기)을 지급하되, 계약해지에 따라 ▲▲가 상환하지 못한 ■■■은행 차입금 2억 원을 우선 변제한다.
2. ▲▲는 웅지세무대학교부터 지급받은 16억 9천만 원을 전액 웅지세무대학에 기부한다. 단, 동 기부금은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2022년 6월 7일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A, ▲▲ 대표 C

그 후 합의를 근거로 아들 F는 [표3]과 같이 교비를 집행하였는데, 집행 총액은 2,771,900,000원^{⑤=③+④}으로 손해배상금 총액 2,090,000,000^{③=①+②}과 차액 681,900,000원^④이 발생하여 소명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답하지 못하였다.

[표3] 특정시기 ▲▲간 교비 입·출금 현황

(금액 단위: 원)

연번	거래일	교비에서 출금 (▲▲로 송금)	▲▲가 입금 교비로 입금			비 고
			입금액	거래시간	잔액	
1	2022/05/09	200,000,000		11:28:21		
2	2022/08/22	1,000,000,000		10:04:55		
3	2022/08/22		900,000,000	10:16:31	900,466,695	
4	2022/08/23	711,900,000		09:00:53		
5	2022/08/23		790,000,000	09:02:36	975,909,925	
6	2022/08/24	860,000,000		09:21:20		
7	2022/08/24		454,465,004	09:23:19	468,068,459	
8	2022/08/24		10,556,000	09:24:18	478,624,459	
9	2022/08/24		30,204,596	09:25:06	508,829,055	
10	2022/08/24		31,401,892	09:27:22	540,230,947	
11	2022/08/24		7,700,000	09:28:18	547,930,947	
	합계	2,771,900,000 ^⑤	2,224,327,492 ^⑥	차액(출금-입금)	547,572,508 ^{⑦=⑤-⑥}	

※ 상기는 학교 측이 제시한 은행전표를 취합해 정리한 자료임

그런데, '24. 7. 감사 당시는 답하지 못하다가 최근('24.12.19) 서면 답변에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 681,900,000^④원은 2022년도 계약(표. ④번)에 따른 미지급 동영상 비용 881,900,000^{④6}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당시 공급된 동영상에 대한 실체 확인을 요구하자 “현재는 저장된 자료가 지워져 확인해 줄 방법이 없다”며 당시 공급했다는 강의리스트만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 당시 강의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이 존재했는지 알 수 없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공급계약을 굳이 체결하여 교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아울러, 위 동영상 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 근거가 2022. 6. 7. 작성한 [표2] 합의서인데, 이때 작성한 자들이 A(총장)와 C(▲▲대표)로, 이들은 특수관계자(부부관계)라서 동 합의가 공정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료가 없으며, 단가 책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산출 근거도 없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집행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사전품의 및 사후 증빙서류 보유, 예산편성자와 집행자 분리, 적정한 내부통제 등)가 있는데도, 사무처 직원(현 부총장) F는 부모의 지시에 따라 ‘집행 품의 및 결재→지출원인행위→지급명령→지급’ 등 절차 없이 집행하고, 구매 관련 일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동 관련, A는 ▲▲가 가져간 손해배상금 중 일부 금액을 학교에 기부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어 “교비에서 수령한 만큼 기부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위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가 ▲▲로 지불한 동영상 비용(2,771,900,000⁴⁶원)과 ▲▲가 기부했다고 주장한 금액(2,224,327,492⁴⁷) 간에 차액(547,572,508원⁴⁷)이 존재하고, 동 기부액도 일정 금원을 입금 후 바로 인출하여 다시 입금하는 식으로 총액을 부풀린 것이라는 F의 진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발전을 위한 진정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A 가족의 부당한 교비 집행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6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교비 손해액이 최소 5억 원⁴⁷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도 해당된다.

46) (2022학년도 계약서) 1,2학기 평균 재학생 1인당 100만 원을 곱한 금액+2억 원(졸업생 및 휴학생 포함)

47) □□로 부당하게 송금한 교비 총액이 2,711,900,000원이나, 기부 주장 금액 2,216,627,491원을 인정하여 차감한다고 해도 교비 손해액은 최소 547,572,508원으로 볼 수 있음.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본 대학의 설립 취지는 학교 교육만으로 회계사, 세무사, 세무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가 운영하던 ▲▲의 종합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모든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가 대학에 제공한 공급대가는 일반 회계학원 동영상 강의의 1/3 수준이며, 재학 및 졸업 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교육부 권고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동영상 공급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고, 2022년에는 ▲▲의 운영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였으며, 심지어 2023년과 2024년에는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학교에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토 결과

A 및 학교 측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첫째, 동영상 공급 계약서만 확인될 뿐 원인행위, 지출행위 서류 및 견적서·납품서·검수 등 구매 관련 일체 서류가 없어, 동영상이 납품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책정 금액의 적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산출근거 자료도 없다.

둘째, 민법상 채권 시효가 소멸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는 손해배상금을 굳이 지급해 교비를 낭비하는 것은 학교에 손실을 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소멸시효(단기 3년)가 완성된 시점이 2018년으로, 이후는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4년이나 경과한 2022년도에 교비를 집행하였기 때문이다.

부가적으로 동 동영상 공급계약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교내 교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 운영하지 못하여 외부 업체가 제공한 강의에 전적으로 의존해 학사를 운영한 것으로, 학교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상기 이유로 A 및 학교 주장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

5. 징계요구 양정

학교가 설립된 2004년도 이래로 A와 부총장(현 총장) C는 외부적으로 '총장'과 '업체 대표'로 행세하며 동 부당한 동영상 공급 계약을 계속해 온 당사자들이며, 더불어 사무처 주임 아들 F도 교비를 관리할 직위에 있던 당사자이다. 그런데 학교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부당한 동영상 계약을 공모(共謀)해 "[표3] 특정시기 ▲▲간 교비 입·출금 현황"과 같이 교비 2,771,900,000원을 불법·부당 집행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C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및 학교 자체 「정관」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에 해당하여 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 징계기준 [별표1]에 따라 '성실의무(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등'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중징계(파면)'를 요구함이 타당하다.

또한, F도 부모와 공모(共謀)해 불필요한 '동영상 공급 계약'에 대한 교비 지급을 실행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것이기에 학교법인 응지학원(응지세무대학교) 「직원인사규칙」 제11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대학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 '업무수행이 태만한 자') '중징계'를 요구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A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학교에 어떠한 보직도 없어 징계 등 처분이 불가능하나, 동 지적의 원인과 결과를 있게 한 자로 그 죄질이 중하므로, 학교는 앞으로 동인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학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부당한 동영상 계약으로 교비를 손실한 부총장 C(현 총장)에게 '중징계(파면)'를, 이를 조력하고 동참한 사무처 주임 F(현 부총장)에 대해 '중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중징계(파면), 중징계)

웅지세무대학교 총장은

① 부당 동영상 계약 등으로 지출한 교비 2,771,900,000원⁴⁸⁾에 대해 A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기존 '동영상 공급계약'은 즉각 해지하고, 앞으로 동 건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엄중 '기관경고'하며,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및 통보)**

48) A 수령액 2,771,900,000원 중 학교 측이 주장하는 기부금 2,224,327,492원(표3,입금액)은 ①교비 부당 인출금인 점, ②부풀린 점(입출금내역 불명확), ③기부금이면 대가가 없어야 한다는 점(기부금 절차 거치지 않음)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학교 손해액으로 감액할 사유가 없어 전액 학교 손해액으로 판단함.

교 육 부

징계·시정·기관경고·통보

제 목 기숙사 신축(BTO⁴⁹ 방식) 추진 부당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은 2008. 1. 30. 학생 제3기숙사(기존 1, 2기숙사 통합)를 민간사업자 '▼▼(주)'가 신축하여 20년간 기숙사운영권을 보장하고, 신축 후 소유권은 응지세무대학교에 이전(기부채납)하는 BTO 사업으로 신청하여 2008. 4. 4. 교육부로부터 동사업 추진 허가를 받았다(학교 소유권 취득일 '10.9.3).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자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안기준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는 제4조에 따른 교사(기숙사 등 교육지원시설 포함)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응지세무대학교의 경우, 2004년에 국내 유일의 회계·세무 특성화 대학을 표방하며 설립인가된 학교로 학생 전원을 기숙사 생활하도록 하는 학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학교홈페이지 발췌).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49) BTO((build-transfer-operate): 한국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대표적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operate)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출처 KDI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및 제15조(회계원칙) 제2호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청렴의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사립학교는 이러한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정관에는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응지세무대학교 「준법통제에 관한 규정(제정일 '20326)」 제13조(준법강령의 준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직원은 언제나 학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학교와의 이해충돌 행위, 내부 거래행위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제2호(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웅지세무대학교(이하 '학교')는 설립 시 세무·회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는 학사시스템을 운용하였으며, 설립 후 정원 증원('04년 360명 → '09년 1,000명)을 계속함으로써 추가 기숙사(이하 '제3기숙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A는 교비나 법인의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제3기숙사 건축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표1 참조), 실체는 전액 교비가 지출 되도록 하여, 결국 학교를 재정파탄에 이르게 하였다(표2 참조).

동 사업 추진 시 A은 웅지세무대학교에서 어떤 보직이나 권한이 없고,⁵⁰⁾ 문서상으로는 동 사업 추진 주체가 학교법인 이사장 C(A의 처)이나, 실제 사업 추진 주체는 (주)▼▼(이하 '시행사')를 통해 A가 주관했다.⁵¹⁾

A가 시행사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 대부분(총 222억 원 중 19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① 미상환시 교비로 보충하는 의무조항⁵²⁾과 ② 구체적인 상환액 마련방안인 '학교와 기숙사 일부 공간 임대차계약을 통한 최소 교비(약 116.8억 원 수익) 보충 방안(이하 '최소 상환 방안')⁵³⁾을 교육부에 사전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⁵⁴⁾ 대출 약정서를 체결하는 편법을 동원하였고, 그 결과 2024. 7. 감사일 현재 시행사가 건축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상당한 교비가 투입(확인 불가)되면서 학교의 모든

50) 교육부 BTO방식 허가일은 2008. 4. 4.이고, 동 사업 추진 협약일 및 대출약정일은 2008. 1. 29.이라 동 시기에A은 학교 및 법인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음. 동 기간('04.3.~'10.2.) 총장은 V이였음.

(A) 이사 및 이사장 '09.3.10.~'11.3.21., 총장 '22.6.1.~'22.8.25. // (C) 이사장 '03.3.7.~'07.3.6., '04.3.~'08.1., 이사 '15.6.29.~'19.6.28., 부총장 '23.1.20.~'24.12.17., 총장 '16.6.23.~'19.12.6., '24.12.18.~현재

51) 아들 F, 처남 R은 시행사의 유일한 거래처는 동 대학교이고, 기숙사 건축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 진술함.

52) BTO 실시협약서(시행사와 법인 및 학교간 '08.1.29.체결) 18쪽 제30조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제2항: '을'(▼▼(주))이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아 대출약정서에 정한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을 부채상환적립계좌에 적립할 수 없는 경우, '갑'(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은 '을'이 당해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을 적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자 또는 후순위대여의 방법으로 '을'에게 지원한다.

53) ('08.1.29.) 시행사 사업계획서(◀◀은행 협의자료)상 상환계획: 시행사가 학교에 공간 임대료로 수취할 수익분석 자료에 따르면, '08. 14.1억 원, '09. 3.6억 원,... '21. 4억 원, '22. 13.9억 원, 15년간 총 116.8억(평균 연 7.7억 원 수익 창출 가능)

54) 교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형해화 할 우려가 큰 사안으로 교육부의 지도·감독 대상에 해당됨.

계좌가 압류되고 세금, 공과금, 교직원 급여가 연체되었다.

또한, 학교 비협조로 학교 재정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은행 독촉 문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2023. 12. 31. 기준 ◀◀은행 최초 대출 원금이 190억 원이고 연체 원금이 57.1억 원(이자포함 65.6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환된 원금이 132.9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한 금액이 상기 ①, ②에 따른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교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 BTO 추진에 따른 ◀◀은행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지출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이 당시 관련자가 없음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감사 당시 현재 교비회계 관리자 F(A 아들, 현 부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계약대로 상환되던 중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기숙사 입주가 제한되어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정상 상환되지 못해 현재 ◀◀은행 대출금이 연체 중이라고 하였다.

학교는 위와 같은 대출상환 부담 영향으로 감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교직원 임금체납 등 사유로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과 학교의 등록금 수입 계좌(◆◆은행 *****)를 비롯한 학교 명의 계좌 총 41개가 압류 상태이다. 이에 학교는 2024학년도 등록금 수납을 위해 ●●금고 계좌를 개설해 거래 중이나 이 또한 압류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위 학교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기숙사 신축과 관련한 교육부 허가 내용과 학교 측이 추진한 ◀◀ 및 시행사 간 체결한 대출약정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민자유치 보증(재산관리방안) 허가 사항 중

(’08.4.4. 교육부 허가 문서(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382(2008.4.4.) 중)

가. 사업명 : 웅지세무대학 제3 기숙사(제1,2기숙사 통합) 민자유치 사업

나. 위 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웅지세무대학 교내

다. 건축면적 1,491㎡, 연면적 8,760㎡(지하 2층, 지상 4층)

라.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

마. 총사업비 : 22,538백만 원/ 제3기숙사 신축비 11,723백만 원(대학측 대응투자 3,200백만 원 포함), 제1기숙사 대학 측 기채잔액 4,075백만 원, 제2기숙사 신축비 미상환액 6,740백만 원 포함

바. 사업조건

- 1) ▼▼(주)가 기존 제1기숙사 대학측 기채잔액 4,075백만 원, 제2기숙사 신축비 미상환액 6,740백만 원 상환
- 2) ▼▼(주)는 제3기숙사 신축 후 웅지세무대학에 **소유권을 이전**(기부채납)하고, 웅지세무대는 ▼▼(주)에 기숙사 **운영권 일정기간** 제공
- 3) 기숙사 사용료는 민자유치 보증허가 신청서(웅지4호, ’08.1.30.)에 따라 매년도별 인상률 범위내에서 기숙사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학생, 학부모로부터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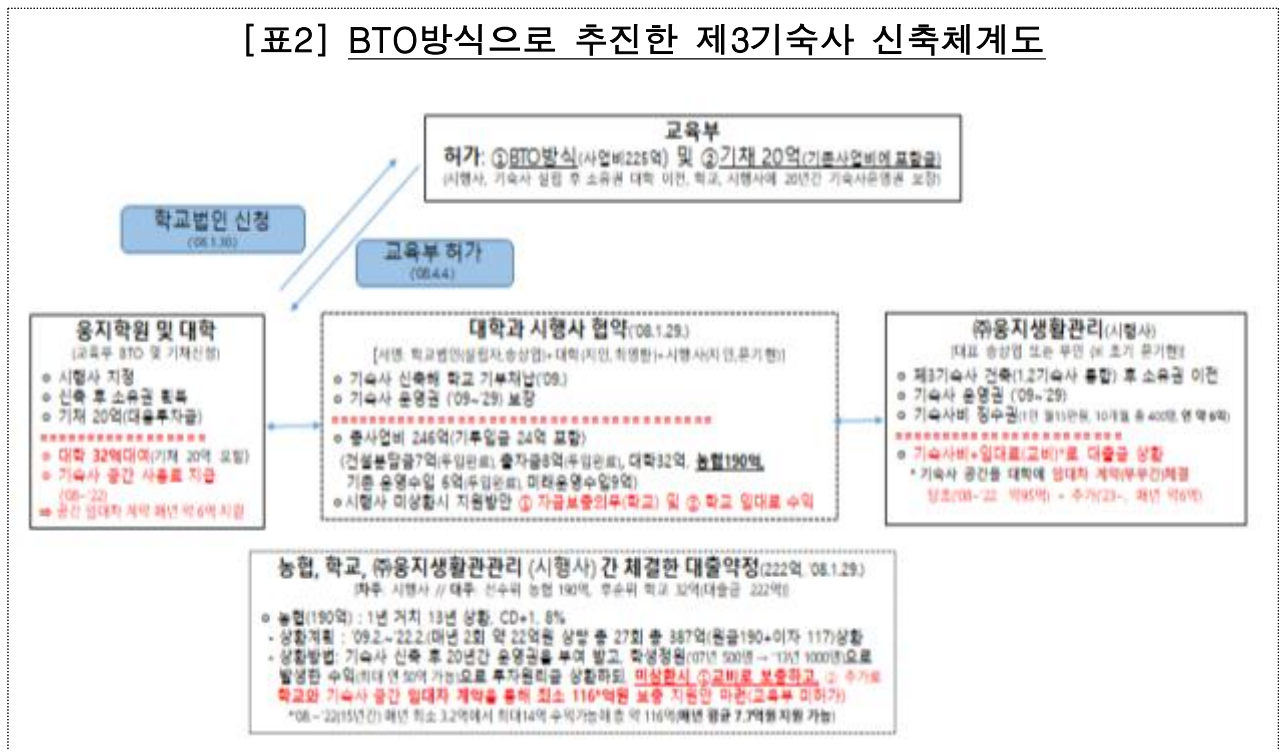
사. 기숙사 운영권 제공기간 : 20년

2008. 4. 4. 교육부가 허가한 사항은 위 [표1]과 같이 법인 및 학교(이하 '학교 측')가 교내 제3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시행사)의 외부자금을 끌어와 건축한 후, 소유권(취득일 '10.9.3.)은 바로 학교 측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그 시설운영권(운영개시 일로부터 20년, '09~'29)을 시행사에 보장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O)이다.

그런데, A가 “시행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교비로 보충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교육부 허가 없이 시행사와 협약하고('08.1.29.), 같은 날짜에 동 내용이 포함된 대출약정서를 ◀◀은행과 체결함으로써 외부자금 미상환시 결국 전액 교비가 투입되는 편법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A이 추진한 제3기숙사 신축 체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특히, 적서 부분이 교육부 허가 없이 추진한 사항이다.

[표2] BTO방식으로 추진한 제3기숙사 신축체계도



교육부의 허가 사항과 달리 학교에 불리한 조건(①, ②)55)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은 A가 투자자금 없이 교비를 쉽게 인출하여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고, 시행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도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55) ① 대출금 미상환시 교비로 보충하는 의무조항, ② 구체적인 상환액 마련방안인 ‘학교와 기숙사 일부 공간 임대차계약을 통한 최소 교비 보충 방안(매년 평균 약 7.7억수익) ※동 최소 상환 방안은 학교에 불리한 조항으로 ◀◀은행 대출 실행 당시 기숙사 운영수익만으로 대출금 미상환을 우려한 ◀◀은행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 A이 제시한 것이라고 학교 관계자(전 ◇◇장 겸 전 ◆◆단장인 처남 R)가 진술

아래 [표3]과 같이 A에 의해 학교 측과 '◀◀은행'이 체결한 대출약정서에는, 동 사업 자금 상환에 문제시 시행사가 학교에 자금 보충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표3] 주요내용 중 참여자 및 역할(의무) 사항 등(발체)

1. 차주 : ▼▼(주), 돈을 빌려 사업(기숙사 신축·관리)을 추진하고 기숙사 운영권을 가짐
2. 선순위 대주 : ◀◀은행중앙회, 190억 제공하고 입출금 계좌 지정 및 대출금 우선 상환처
3. **후순위 대주** :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 32억 원내 제공, **차주의 자금보충의무 가짐**
4. 연대보증인 : A
5. **상환방법(순서)** : 선순위대출금을 전액 상환 후, 후순위대출금은 차주와 협의 상환
6. **후순위대주의 확약** : 차주 자금부족 시 선순위대출금 상환을 위해 후순위대주는 출자 또는 대여금으로 차주 제공의 자금보충의무 확약(자금보충의무, 선순위대출금의 상환의무 규정)

상기 '교비 자금 보충 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A은 기숙사 일부 공간(제2 3기숙사 지하 및 지상1층)을 시행사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학교에게 임대하여 연평균 7.7억 원의 운영수입을 발생시켜 동 자금을 ◀◌은행에 상환(약 116억 원)하는 방안인 '기숙사(일부 공간) 임대차 계약'도 아래 [표4]와 같이 실행하였다.

[표4] 2007. 2. ~ 2022. 2.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2건(2, 3 생활관)(발체)

① (제2 ◇◇) "갑" 웅지◇◇리(주)(시행사) 대표이사 X, "을" 웅지세무대학 학장 V

1. 건물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1. 임대차 구분 : 임차면적 : 1,400.00㎡(제2 생활관 지하:1,100.00㎡, 1층 : 300.00㎡)
제1조 "갑"은 운영권 소유의 기숙사 건물내의 공간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갑"이 정한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에 의거 임차한다.
 3. 임대료 일금이억원정(₩200,000,000원)으로 한다.
 4. ~ 5.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
 6. 임대차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이하 생략// 계약일 2007.2.28.

② (제3 생활관) "갑" 웅지◇◇리(주)(시행사) 대표이사 X, "을" 웅지세무대학 학장 V

- 본 약정서는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웅지세무대학(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제3생활관의 강의실 임대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서를 체결한다.
-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증축예정인 제3생활관의 강의실 임대 및 운영을 함에 있어 "갑"과 "을" 쌍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생략
- 제3조(위탁물건) 이 계약의 주된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번지 내의 제3생활관의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하며, 강의실 임대면적은 3,550.00㎡와 같다.
- 제4조(계약기간) 본 강의실 임대의 계약기간은 제3생활관 준공일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5조(임대료 납부) 매년 고정임대료는 일금오억원(₩500,000,000)정도로 하며, 임대료의 납입은 매년 3월초, 9월초 2회 분납한다. 이하 생략// 계약일 : 2007.12.28.

그런데, 위 ① '자금 보충 의무조항'과 기숙사 일부 공간 임대차계약을 통한 ② '최소 상환 방안'은 학교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

증여·교환·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측과 시행사 및 ◀◀은행 간 체결한 협약과 대출약정이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출금 상환 종료 기한도 2022년 2월까지로, 이후는 상기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할 근거가 없었다.

※ 상기 임대차 계약(2007~2022)에 따른 임차료 지급 관련 회계서류도 학교에서 유지·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부당집행 금액 확인이 불가하였다.

그럼에도 A는 ◀◀은행 대출금을 다 상환하지 못한 이유로 2024. 7. 감사일 현재, 같은 방식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재차 갱신해서 일부 수정(총 임대료 7억 → 5억으로 낮춤) 후, 그대로 유지하여 교비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 이때 갱신 계약은 부부인A(당시 총장)와 C(당시 시행사 대표) 간 체결한 것이라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표5] 2022. 9. 1. ~ 2029. 12. 31. 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2건(2, 3 생활관)(발체)

① (제2 생활관) “갑” 웅지◇◇리(주)(시행사) 대표이사 C, “을”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A

1. 건물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2. 임대차 구분: 임차면적 : 1,281.56㎡(제2생활관 지하:1,173,32㎡) ※ 지하만 임대
제1조 “갑”은 운영권 소유의 기숙사 건물내의 공간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갑”이 정한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에 의거 임차한다.
3. 임대료 매년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으로 VAT 포함한다.
4. ~ 5.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
6. 임대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2.9.1.부터 2029.2.28.까지로 한다.(계약일 : 2022.8.1.)

② (제3 생활관) “갑” 웅지◇◇리(주)(시행사) 대표이사 C, “을” 웅지세무대학교 총장A

1. 건물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2. 임대차 구분: 임차면적 : (제3◇◇ 지하1층 1,499.43㎡, 지하2층 899.57㎡, 지상 1층 1,478.62㎡)하며 강의실 임대면적은 3,877.62㎡와 같다.
제1조 “갑”은 운영권 소유의 기숙사 건물내의 공간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갑”이 정한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에 의거 임차한다.
3. 임대료 매년 일억삼천만원(₩350,000,000원)으로 VAT 포함한다.
4. ~ 5.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
6. 임대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2.9.1.부터 2029.2.28.까지로 한다.(계약일: 2022.8.1.)

앞서 지적한 문제점은 최초 2007년부터 시작된 행위로 현재 학교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증빙에 어려움이 있어, 입증 가능한 최근(2022년 2월 이후) 부당 행위를 중심으로 지적하였다.

2022. 8. 1. 체결한 '기숙사(일부 공간) 임대차 계약'은 시행사 대표 C와 총장 A간 체결한 갱신 건으로, 학교와 시행사가 체결한 '기숙사(일부 공간) 임대차 계약'은 학교가 공간이 필요해 한 계약이 아니라 A가 ◀◀ 대출금을 교비로 상환하기 위해 체결한 불법·부당한 계약이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지하공간을 대부분 임차했다는 점, ② 학생 수 감소로 남는 공간이 학내에 많은데도 굳이 동 공간을 임차했다는 점, ③ 임차한 공간 대부분이 기숙사 학생들 전용 공간(휴게실 세탁실 등)이라, 동 공간 사용료는 이미 기숙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④ 동 공간이 장기간 방치로 누수·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점, ⑤ 통상 부동산을 임차할 때 공간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검토자료도 없다는 점 등 이다.

사무처 직원 아들 F(현 부총장)는 상기 부당 계약을 근거로 교비 통장 4개(a, b, c, d)에 보관 중이던 교비를, 아래 [표6] “ '22.8. 이후, 학교, 시행사 간 거래 현황”과 같이 2022. 9. 20. 5천만 원 등 8회 총 1,600,000,000원^①(연번, 2 및 13-18번)을 출금하여 시행사 계좌에 임차료 등 명목으로, 사전 원인행위(품의), 지출 결의 등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상 준수해야 할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하였고, 동 지출관련 서류도 작성·보관한 사실이 없다.

[표6] '22.8. 이후, 학교, 시행사 간 거래 현황

(금액 단위: 원)

순	연도	월	일	적요* (지출사유)	출금(송금처) (▼▼)	계좌	교비계좌		
							입금내역(입금처:(주)□□)		
							금액	시간	잔액
1	2022	9	20	21년 임차료	50,000,000	(a)			
2	2022	9	20	21년 임차료	50,000,000	(a)			
3	2022	10	11	2생활관용도변경	5,551,777	(a)			
4	2023	2	16	▼▼	300,000,500	(d)			
5	2022	10	11	▼▼	500,000,500	(d)			
6	2022	10	11	▼▼	372,202,925	(d)			
7	2023	7	28	생활관 에어컨공사	103,500	(b)			
8	2023	8	24	생활관비 대납	76,200,300	(c)			
9	2023	8	17	생활관비부채납(야구)	88,000,300	(c)			
10	2023	9	25	생활관 유류비	5,000,300	(c)			
11	2023	10	30	생활관 인터넷 공사	2,200,000	(b)			
12	2023	11	24	2019학년도 유류비	5,500,000	(b)			
13	2024	2	23	2019학년도 임차료	200,000,000	(b)	200,000,000	11:05	309,592,338
14	2024	2	23	2019학년도 임차료	300,000,000	(b)	300,000,000	11:07	309,592,338
15	2024	2	21	2020학년도 임차료	250,000,000	(b)	250,000,000	11:36	251,827,628
16	2024	2	21	2020학년도 임차료	250,000,000	(b)	250,000,000	11:41	251,827,628
17	2024	2	20	2021학년도 임차료	250,000,000	(b)	250,000,000	14:01	265,403,603
18	2024	2	20	2021학년도 임차료	250,000,000	(b)	250,000,000	14:03	265,403,603
19	2024	2	8	생활관 유류비	5,000,000	(b)			
20	2024	2	7	생활관 유류비	9,000,000	(b)			
합계					2,968,760,102 ^②		1,500,000,000 ^③	차액	1,468,760,102 ^{④-③-④}

* 상기는 입출금내역 소명을 요청하여 C, F 진술로 재구성한 것임.

※ 기부금이라 주장한 실제 입금액(15억)은 시행사(주)▼▼가 아닌, A가 설립·운영 중인 앞선 14번 지적에 언급된 동영상 제작 업체 (주)□□가 입금한 금액임.

더불어 A는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기숙사 '수리비', '유류비' 등 1,368,760,102원(연번 3~12, 19, 20번)^②도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총 2,968,760,102^{③=①+②}원을 부당집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A 가족의 부당한 교비 집행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6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교비 손해액을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를 최대 수용하여 판단하더라도 최소 5억 원⁵⁶⁾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도 해당된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A와 부인 C는 상기와 같은 계약체결은 교육부의 '민자유치 보증(재산관리방안) 허가 및 기채 및 담보 제공 허가' 사항에 따른 것으로, 대출금약정시 ◀◀은행과 기 체결한 ㉠ '학교 자금 보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 지난 2018년 교육부 감사 시 동 관련 유사한 지적⁵⁷⁾이 있었으나 당시 임대차 계약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현재 문제되는 부당 지출액 중 15억 원(표6, 연번 13~18번)은 학교에 기부된 것으로 불법적이지 않으며, 교육부 허가 사항 중 ㉢ '기숙사 운영권'에는 시행사가 동 공간을 학교에 임대차하는 권한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 결과

㉠ (학교 자금 보충 의무 관련) 교육부는 BTO방식 사업추진과 기채 20억 원을 허가한 사항은 있으나, 시행사 자금이 부족할 때 교비를 보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56) 시행사 등으로의 교비 부당 송금 총액이 2,968,760,102원이나 설령, 기부 주장 금액 1,500,000,000원을 인정하기 위해 차감한다고 해도 교비 손해액은 최소 1,468,760,102원으로 볼 수 있음.

57)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 지적 중, '교사 임차 및 (주)▼▼ 관리비용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은 임차료 7억 원이 과하다는 취지로, 이를 개선해 임차료를 5억 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

허가한 사실이 없다.

㉔ **(교육부 실태조사 관련)** 강의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2018년도 실태 조사의 주요 지적은 ‘임차료 산정 과다’이고, 현재 2024년 지적은 ‘불필요한 임대차 계약’ 체결로 교비 손실을 지적하는 것이라 내용과 기간이 다른데도 학교 측이 같은 지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 **(15억 원 교비 기부 관련)** A가 기부한 금액은 앞선 <표6> 연번 13~18번의 입금 내역과 같이 교비에서 임차료 명분으로 A가 우선 인출한 금액 중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 기부금이라 인정할 수 없다.

당시 F는 통장 입출금 전표만 보여주며 총 기부액이 15억 원이라고 주장 하였으나, 연번 13~18번 입금내역과 같이 입금 후 잔액이 모두 동일한 점을 감사자가 질의하니, 기부 총액을 늘리기 위해 시행사에 교비로 입금한 돈을 바로 인출해 다시 입금하는 식을 반복해 총액을 부풀린 것이라 답변한 사항⁵⁸⁾으로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㉕ **(학생생활관 운영권 관련)** ‘학생생활관 운영권’은 기숙사비 징수 및 기숙사 유희공간을 외부(카페, 편의점 등)에 임대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 건물 소유자인 학교에 불필요한 공간을 임대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 부총장 C, 사무처 주임 F는 문답 과정에서 동 임대차 계약은 임차 목적이 아니라 시행사의 손실을 보충하고자 한 것이고, 시행사와 학교는 동일한 것이라 진술하였기에 이들의 행위는 더욱 인정할 여지가 없다.

※ **(주)▼▼(시행사)가 부당 업체인 근거**

- ① 동 시행사는 2005. 12. 설립 시 타인(A 지인 X) 명의였지만, 이후는 A 본인과 배우자(부총장 C)가 교대로 대표를 하였고, 2024. 7. 감사일 현재는 본인(A)이 대표로 되어 있으며, A 아들 F에 의해 교비가 시행사 계좌로 자유롭게 입출금되고 있음.
- ② 동 시행사는 타 대학 기숙사를 건축하거나 관리한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로 거래처는 학교가 유일함.
- ③ 감사 문답과정에서 F도 시행사와 학교는 같은 것이라 진술함(‘한 몸’이라고 진술함).

58) 문답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입금 후 바로 인출하여 다시 입금하는 식으로 총액을 부풀린 것이라는 F 진술이 있음

5. 징계요구 양정

A와 부총장 C는 동 '기숙사(일부 공간) 임대차 계약'건 관련(2022년 이전 건은 제외)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22. 8. 1.에는 총장과 시행사 대표였고, 현재는 직위가 서로 바뀐 상태로 동 계약을 주도하고 교비를 집행·관리한 직위에 있던 자이며, 특히 이해관계자(부부관계)자에 해당된다. 여기에 교비를 실제로 입출금 관리하는 자인 F는 사무처 주임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장남이다.

이처럼 학교 경영 최고 직위에 있는 자들이 학교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고 공모해 상기처럼 부당한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표6] “ '22. 8. 이후, 학교, 시행사 간 거래 현황”과 같이 교비 2,968,760,102원을 부당하게 집행해 학교에 손해⁵⁹⁾를 입히고 A 업체를 통해 자신들의 사적 이익까지 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 부총장 C(현 총장)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및 학교 자체 「정관」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에 해당하여, 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 징계기준 [별표1]에 따라 '성실의무(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등'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중징계(과면)'를 요구함이 타당하다.

F 또한 자기 부모인 A 및 C와 공모해 상기 거액의 교비를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입출금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에, 학교 법인 응지학원(응지세무대학교) 「직원인사규칙」 제111조 제1항 3호 및 5호의 '대학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 '업무 수행이 태만한 자'에 해당하여 '중징계'를 요구함이 타당하다.

또한, A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학교에 어떠한 보직도 없어 징계 처분이 불가능하나, 그 비위가 중하므로 학교는 앞으로 계약 관계 업무 등 추진 시 관련 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59) 2,968,760,102원은 기부액 미감안 손해액이고 학교 측에서 기부액이라고 주장하는 15억을 감안해도 학교 손해액은 최소 1,468,760,102원(2,958,760,102원 -1,500,000,000원)임.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부당하게 학교를 운영하여 교비를 손실한 C(현 총장)에 대해 '중징계(파면)'를, 이를 조력한 사무처 주임 F(현 부총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기 바랍니다. **(중징계 (파면), 중징계)**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① 부당 지출한 교비 2,968,760,102⁶⁰⁾원에 대해 A 및 시행사 '▼▼(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부당한 계약인 '기숙사 임대차 계약'은 즉각 해지하고,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기관경고'하며,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및 통보)**

60)A 수령액 2,968,760,102원 중 학교 측이 주장하는 기부금 1,500,000,000원(표6,입금액)은 ①교비 부당 인출금인 점, ②부풀린 점(입출금내역 불명확), ③기부금이면 대가가 없어야 한다는 점(기부금 절차 거치지 않음)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학교 손해액으로 감액할 사유가 없어 전액 학교 손해액으로 판단함.

【별첨】

웅지세무대학 관련 업체

“생 략”

교 육 부

징계·경고·시정·개선

제 목 교비회계 운영 부당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응지세무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응지세무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 예산 편성·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며 수입·지출 시 근거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경비는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 체육비, 4. 교비회계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항(예산의 구분) [별표2]에 따르면 법인이사회 회의비는 법인 세출예산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따르면 징수대장, 수입부,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 서류 등 학교에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회계관련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규칙) 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웅지세무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무처(회계팀)는 세무 및 회계업무, 자금 관리·계획 및 예·결산, 장부관리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라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해진 목적 내에서 사전 결재된 품의서, 지출원인행위 등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근거로 공정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수입·지출 총괄부, 금융거래 실적 등 장부·서류 등을 비치·보존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교비회계 未증빙 수입·지출 회계처리

그럼에도 웅지세무대학교는 [표1] '교비회계 未증빙 수입·지출 회계처리 현황'과 같이 2022년~2023년 학교회계 수입 총 1,200건, 22,159,771,474원과 지출 총 1,343건, 23,570,016,441원과 관련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를 생산·보존하지 않았다.

[표1] 교비회계 未증빙 수입·지출 회계처리 현황

(회계원장 기준, 금액단위: 원)

연 도	학 교 회 계				비 고
	수 입		지 출		
	건	금 액	건	금 액	
2022	235	16,484,665,830	569	18,228,750,915	
2023	965	5,675,105,644	774	5,341,265,526	
합계	1,200	22,159,771,474	1,343	23,570,016,441	

나. 이사회 경비(회의비) 교비회계 집행 부당

또한, 응지세무대학교 前 사무처 주임(9급) F(현 부총장)는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으로 지급해야 할 이사회 개최 관련 회의비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없이 [표 2] ‘이사회 회의 관련 경비 교비회계 지출 현황’과 같이 2022. 6. 10. ‘이사회 거마비 1차대납’ 150만 원, ‘이사회 2회차’ 명목으로 150만 원, 2023. 2. 15. ‘1차 거마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비회계 계좌에서 10차례 총 42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표2] 이사회 회의 관련 경비 교비회계 지출 현황

(회계원장 기준, 금액단위: 원)

연번	예금주	송금날짜	받는이	금액	통장 적요란
1	웅지세무대학교	2022.6.10.	F	1,500,000	이사회 거마비 1차대납
2			-	300,000	이사회 2회차
3			-	300,000	
4			-	300,000	
5			-	300,000	
6			-	300,000	
7	웅지세무대학교	2023.2.15.	B	300,000	1차 거마비
8			-	300,000	
9			-	300,000	
10			-	300,000	
합계				4,200,000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가. 교비회계 未증빙 수입·지출 회계처리

2022. 5. 인수인계 당시 회계프로그램(G20)에 대한 운영법을 배우지 못해 활용하지 못했고, 응지세무대학교는 2022. 11.부터 임금이 체불된 교원들이 대학의 통장을 압류함에 따라 학교의 모든 행정이 마비되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채허가 승인을 받는 즉시 학교통장의 압류를 해제하고 학교회계의 수입·지출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이사회 경비(회의비) 교비회계 집행 부당

응지세무대학교는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도 법인회계 계좌 압류상태로 운용이 불가능하였고 A가 이사회 참석 임원들에게 현금 지급을 지시하여 법인 업무였지만, 학교회계로 지급 가능하다고 본인(사무처 주임 9급 F)이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학교법인 응지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임시 이사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법인회계의 수입금이 전혀 없었으며, 향후 법인회계의 소득이 발생되면 법인회계에서 지급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가. 교비회계 未증빙 수입·지출 회계처리

2022년~2023년 징수대장, 수입부,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 서류 등 학교에 장부와 서류 미생산과 객관적인 증빙 서류 없이 발생한 계좌 이체의 회계처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규칙) 위반이 명백하다.

응지세무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5조(사무처)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인 前 사무처 주임(9급 F(현 부총장)과 前 사무처장 C(현 총장)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의견만

제시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할 직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나. 이사회 경비(회의비) 교비회계 집행 부당

웅지세무대학교는 법인회계 예산 부족으로 교비회계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⁶¹⁾에 명백히 (관)이사회비(항)이사회비(목)임원수당으로 법인세출예산과목으로 명시된바, A 지시와 F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행은 명백히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이므로 웅지세무대학교 의견을 받아들여가 어렵다.

A 지시와 F 본인 판단하에 이사회(22. 4. 13. 추정) 참석 이사들에게 자비로 이사회 거마비 150만 원을 대신 지급 후 2022. 6. 10. 교비회계에서 본인 계좌로 '이사회 거마비 1차 대납' 명목으로 이체한 건과 그 외 이사들에게 지급한 총 9건, 총 270만 원 이체 건은 지출품의 및 이사회 회차, 참석자, 수령증 등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안이다.

특히, 2022. 6. 10. F에게 이체한 150만 원의 경우, 회계원장 적요란과 이체일로 이사회 회차를 추정할 뿐이고,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F이 교비회계로 보전받은 '이사회거마비 1차 대납' 명목의 150만 원은 F에게서 '회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징계요구 양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①교비회계 관련 객관적인 증빙 서류 없는 회계처리와 회계 장부 미생산, ②권한없는 자(A)의 지시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비로 이사회 회의비 현금을 지급, ③법인회계 집행 항목을 교비회계 목적 외로 사용한 F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제3항에 따른 징계사유 및 학교법인 웅지학원(웅지세무대학교) 「직원인사규칙」 제111조(징계) 제1항 제3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대학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에 해당되며, 비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경징계'로 처분을 요구한다.

6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법인세출예산과목 「별표2」

C의 경우는 응지세무대학교 「위임전결규정」 제7조(위임전결사항) 제1항 [별표] 위임전결사항 사무처 회계업무관련 전결권자로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하였기에 '경고'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감사 당시(24.7.) 응지세무대학교는 감사 지적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 과실 이상의 비위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행정력이 부재하므로, 회계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은

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前 사무처장 C(現 총장)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②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회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前 사무처 주임(9급) F(현 부총장)에게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③ 법인회계에서 2,700,000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① 교비회계에서 보전받은 1차 회의 거마비 대납금 1,500,000원을 F에게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교비회계 처리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국세 등 미납 및 학교계좌 압류 부적정

소관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의 예금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와 보호) 제3항에 따르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권리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에서는 ‘각종 세금·공과금’은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자동차세로 정하고 있으며,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따르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및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보험료)에 따라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서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 등은 압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국세 등 각종 부담금 미납에 관한 사항

그럼에도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별표1] “국세 등 미납 현황”과 같이 ① 국세 170,400,060원, 지방세 591,272,680원, 교통유발부담금 43,218,220원 ② 사학연금 303,397,440원 ③ 4대 사회보험료로서 국민연금 12,880,600원, 건강보험 71,695,390원, 고용보험 3,860,110원, 산재보험 1,353,600원, 총 1,198,078,100원을 미납하는 등 공공기관(학교 및 법인)으로서의 납부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학교계좌 압류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은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응지세무대학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업료계좌 및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계좌는 압류 할 수 없음에도 학교계좌(■은행 580-91007-17407) 등 [별표2] “학교계좌 압류 현황”과 같이 총 3개 은행사 41개의 계좌가 압류되어, '24.7.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는 임시 이사진(‘20.7.~’22.5.)이 학교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들의 연봉을 과다채정하였고,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의 감소로 2022년부터 등록금수입으로는 인건비의 감당이 어려워 임금체불의 발생과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이 미납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A가 기부한 수익용 기본재산(감정가액 300억 원)을 담보로 100억 원의 기채허가의 승인을 얻을 경우

압류를 해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결과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의 주장과 달리 학교계좌는 A가 이사장으로 재직('09.3.~'15.4.) 당시 주식회사 ▶▶과 ▣▣▣▣학원 건물(소유자:A)의 부동산 임대차계약('13.9.23.~'18.12.31.)⁶²⁾ 소송(업무상배임미수)으로 인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압류금액: 30억) 관련 학교법인 응지학원과 응지세무대학교 모든 계좌의 압류조치('19.4.29.)로 학교계좌 압류가 시작되어 2022년부터 연봉 과다채정 및 학생 등록금 수입의 감소로 인한 임금체불과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이 체납되어 기본재산 압류가 시작되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과거에도 학교의 A가 기숙사 공사대금 허위지급('08~'09년, 약 59억원) 및 동영상 강좌 대금 허위지급('09~'13년, 약 48억 원) 등 총 약 107억원 교비횡령으로 판결('15.5.)⁶³⁾을 받은 바 있고, 2018년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설립자의 개인채무 변제 등 약 24억 원 교비횡령이 계속되어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교비집행으로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5.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 및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① 앞으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미납으로 학교계좌가 압류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②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미납액을 납부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압류된 학교계좌에 대해 압류해제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62) A의 소유 건물에 대하여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 명의로 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작성

63) A은 2015년 교비회계 107억원 횡령, 2022년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각 확정(2015년 임원취임승인취소), 2018년 당시 총장 겸 이사였던 배우자 C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해임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별표1】

국세 등 미납 현황

국세 등 미납 현황

“생략”

사학연금 부담금 미납 현황

“생략”

4대 사회보험료 미납 현황

“생략”

【별표2】

학교계좌 압류 현황

“생 략”

교 육 부

경고·기관경고·통보·통보(인사자료)

제 목 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응지세무대학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및 「응지세무대학교 시설물관리규정」에 의하여 대학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시설법」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제2항 및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 고시)」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에서 이상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교체·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시설법」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응지세무대학교 시설물관리규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대학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빙기·우기·동절기를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응지세무대학교는 위험 요소가 없도록 교육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 및 보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웅지세무대학교는 2023. 6.부터 2024. 6.까지 여름철, 장마철, 해빙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사진] '생활관 마감재 탈락 현황' 같이 생활관의 마감재 탈락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위험요소가 확인되는데도 [별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현황'과 같이 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교육부에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일 현재까지 위험요소에 대한 교체 및 보수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사진] (24.7.) 생활관 마감재 탈락 현황

-	-	-
제1생활관 누수, 마감재 탈락 ※ 해당 공간 '20년 이후 미사용	제2생활관 누수, 천정재 탈락 ※ 해당 공간 '20년 이후 미사용	제3생활관 마감재 철거 후 방치 ※ 해당 공간 '20년 철거 후 방치

※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에는 ◇◇ 전체 면적을 교사면적으로 제출

4. 관계기관 의견

웅지세무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임금체불로 인해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가 계속 퇴사함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철저히 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웅지세무대학교 총장은

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위험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② 감사결과 확인된 ◇◇ 누수 및 마감재 탈락 등이 발생한 부분은 안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 및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경고’ 관련자 중 과장 Y, 계장 Z는 감사일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현황

“생 략”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부적정

소관기관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응지세무대학교 사무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응지세무대학교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인 활용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실시하며 총괄적인 물품관리 업무를 학교장 책임하에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및 제50조(물품의 관리) 제4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응지세무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별 또는 부서별로 일부 내지 전부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응지세무대학교는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웅지세무대학교는 2016년도 재물조사(16.11.1.~16.11.30.)를 실시하면서 2003. 4.부터 2016. 10.까지 구입한 물품 현황에 대해서만 존재 여부를 파악하였고, 2017년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별표] '재물조사 실태 현황'과 같이 유형 고정자산의 도난, 망실, 불용처리 등 재고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2023학년도 결산 대차대조표의 집기비품 합계 4,791,282천 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웅지세무대학교는 시설물 관리자가 계속 변경되면서 물품관리 및 재물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향후 시설물 관리 인력을 보충하여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와 재물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웅지세무대학교 총장은

① 학교 물품에 대하여 도난, 망실, 파손 여부와 재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② 재물조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차대조표 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재물조사 실태 현황

“생략”

교 육 부

경고·시정·통보(인사자료)

제 목 생활관 시설관리비 교비회계 지출 부적정

소관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응지학원, 응지세무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학교법인 응지학원과 응지세무대학교는 2008. 1. 29. ▼▼(주)(현 대표 A)과 '응지세무대학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여 민간사업자인 ▼▼(주)에 응지세무대학교 학생생활관시설의 관리운영 및 생활관운영수입의 수령 등 학생생활관운영권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부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생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6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15조(회계원칙) 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웅지세무대학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2008.1.29.)」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은 ▼▼(주)에게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 동안 제1, 2, 3 생활관 시설의 관리운영과 수입의 수령 등 운영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웅지세무대학교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주)에서 부담하고 있는 학생생활관의 시설관리·운영 비용에 대하여 교비회계에서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웅지세무대학교는 2021. 2. 11. □□(주)(대표 AA)와 ‘건물관리용역(관리, 미화, 영선) 계약(계약금액 월간 16,567천 원)’을 체결하면서 관리업무의 범위 및 대상*에 ▼▼(주)에서 부담해야 하는 생활관(3동 20,657㎡)의 건물관리용역⁶⁴⁾을 포함하여 2021. 3. 31. 16,567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별표] ‘건물관리용역비(경비, 미화, 영선) 교비회계 지출 현황과 같이 2021. 3.부터 2022. 9.까지 총 18회 317,625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건축물(본관, 강의동, 제1·2·3◇◇): 29,511㎡, 운동장 및 기타시설물: 38,513㎡, 합계 68,024㎡

그 결과, 웅지세무대학교는 생활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관 부분의 관리용역비 96,453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17,625,142원 × 20,657㎡(생활관면적) / 68,024㎡(합계 면적) = 96,453,940원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웅지세무대학교는 생활관 시설관리비는 2021. 3.부터 2022. 9.까지 지급된 것으로 당시 임시이사진(‘20.7.~’22.5.)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 현재 학교 경영진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4) 대학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체(□□(주))에 지급할 용역비가 미지급 및 계속 연체되어 업체에서 계약을 해지함(‘22.9.)에 따라, 2022. 10. 이후 업체에 소속된 직원을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관리(경비, 미화, 영선) 담당함(‘24.7.26. 前 기획처장 R 답변).

나. 검토결과

그러나, 응지세무대학교는 건물관리용역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주)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생활관의 미화 등 관리용역비까지 포함하여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며, 이는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교비회계를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현재 학교 경영진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징계요구 양정

前 총장 AB, 사무처장 AC, 일반직 4급 R, 계약직 AD는 건물관리용역의 계약과정에 면밀한 검토 없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생활관의 청소, 경비, 미화 비용까지 교비회계로 지급한 행위는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련법령을 위반하고 대학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학교법인 응지학원 정관」 제5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및 「직원인사규칙」 제111조(징계) 제1항 제3호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피해보상이 가능한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경징계 이상의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조치할 사항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① 前 총장 AB, 사무처장 AC, ◆◆단장 R, 계약직 AD는 ‘경징계’ 조치가 필요하나 감사일 현재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어,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②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학생생활관 관리비 96,453천 원을 ▼▼(주)에서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 및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관련자 중 총장 AB, 사무처장 AC, 계약직 AD는 감사일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

건물관리용역비 교비회계 지출내역('21.3.~'22.9.)

“생 략”

□ 현지조치 사항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p>교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해촉 미검토 부적정</p>	<p>○ 학교법인 응지학원 및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2023. 6. 21.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A가 과거 교비 횡령과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정관」 제 57조의2(외부위원의 임기등) 제2항 제2호(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내지 제3호(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외부위원 해촉가능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동 규정에 따른 '해촉' 검토조치 하지 않은 채 외부위원직을 유지토록 한 사실이 있음.</p> <p>※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해촉 권한은 2023. 9. 22. 이전에는 총장에게, 2023. 9. 22. 이후에는 학교법인에 있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법인 응지학원 「정관」 제57조의2】</p>	<p>○ 기관주의</p> <p>-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 및 응지세무대학교 총장은 향후 교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해촉사유를 충실히 검토하는 등 해촉과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p>